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CONTENTS

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1장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2
2장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흐름도	7
3장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8

II 교권보호위원회

1장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14
2장 교권보호위원회 종류	17

III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1장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	28
2장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29
3장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분쟁 조정	62

IV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1장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68
2장 그 밖에 사법적 조치	77
3장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 관련 지원 제도	80
4장 교육활동 침해 이외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	86



V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90
2. 「형법」 제11장(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91
3.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92
4. 「형법」 제2편제30장(협박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93
5. 「형법」 제2편제33장(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94
6. 「형법」 제2편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96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97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98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 100
10.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102
11.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103
1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105
1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1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106
1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107
1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108

CONTENTS

VI 부록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안심의 회의 시나리오(예시)[분쟁조정 단계 제외]	112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회의 시나리오(예시)	117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안)	120
4. 각종 서식	124
5.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166

I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1장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관련 법률 및 고시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¹⁾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말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행위’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고,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²⁾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보호자 등’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해당될 수 있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가. 교원의 범위

-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립, 공립, 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을 말한다.

Q. 교육활동 중인 강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현행 법령상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강사 등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보호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학생 조치와 피해지원은 교원에 준하여 할 수 있습니다.

- ▶ (학생 조치)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엄중하게 대응
- ▶ (강사 지원) 시·도교육청 여건과 정책에 따라 지원 여부와 범위가 다르므로, 관련 부서(또는 기관)를 통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 확인 필요

2) 「교원지위법」 제19조에 의하면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중'의 의미

-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교육활동 중이었던지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교육활동 중이 아닌 교원에 대한 권리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는 다루지 않는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교육활동 중'의 예시

-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②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 및 일과 시간 이외의 교외생활지도
- ③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④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⑥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 지도나 상담
- ⑦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중 입장 시 행하는 활동
- ⑧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생징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안 조사 및 상담 등
- ⑨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 시간 전 또는 퇴근 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학생에 관한 상담
- ⑩ 그 밖에 법령에 의해 교원이 직무상 행하는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등

Q. 퇴근시간 이후 학부모가 교원의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자녀에 대한 학업상담을 하던 중, 교원에게 폭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네,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출근 전·퇴근 후)라도 교원이 학생·보호자와 학생의 학업·생활지도 또는 사안 처리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상담을 진행한 경우에는 '교육활동 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담 과정에서 폭언이나 반복적인 부당 요구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척이 가능합니다.

Q. SNS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네,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 명예훼손 등은 행위 당시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성립할 수 있고, 한번 글이나 게시물이 작성된 다음에는 그 피해가 교육활동 시까지 계속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규정한 취지 및 해당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SNS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³⁾

Q. 동료 교원과 업무 분장 등으로 갈등이 있는데,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다를 수 있나요?

A. 동료교원 또는 학교관리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동료 갈등, 업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등 고충이나 관리자의 복무관리 또는 행정사항에 대한 지시 등은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제도를 통해 처리함이 적합합니다. (86p 참조)

3) (참고) 서울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2025누6655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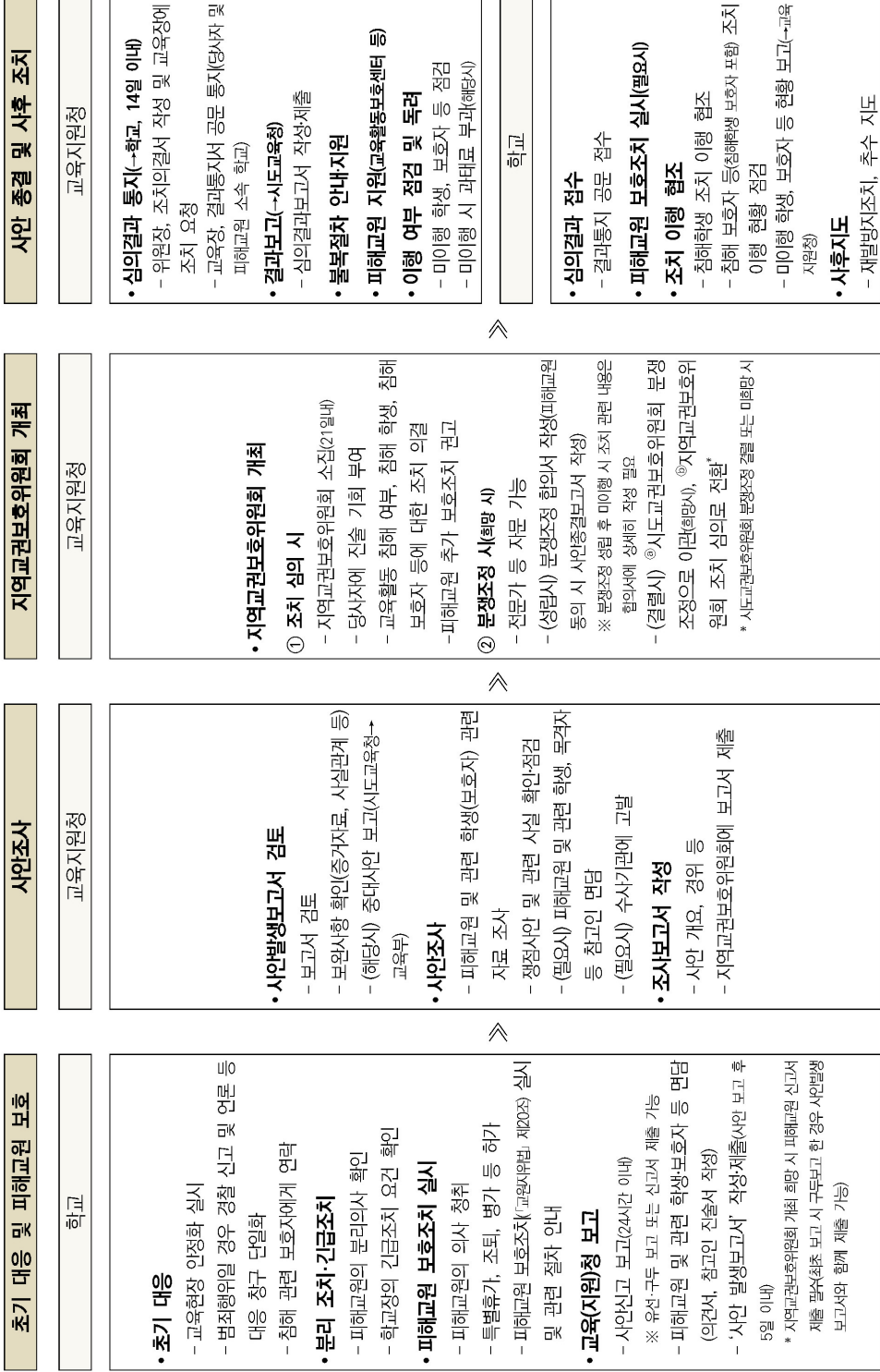
4.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다.

근거	침해행위 유형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불법정보 유통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부 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⁴⁾ 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4)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장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흐름도



3장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교원지위법」 제24조)

가. 필요성

-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의 심리적 소진 및 사기를 저하시켜 학교 교육력을 저해하고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따라서 교원과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모든 학생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교원이 교육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 이에 학교는 교육활동 보호의 주체인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 등 모든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근거
 -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 횟수: 연 1회 이상
 - 학년 초 또는 학기 초 연수를 권장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
- 대상별 실시 방법(예)
 - 교직원: 교직원 회의 등 직장 내 연수, 온라인 연수를 활용하여 실시
 - 학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 학생 활동 중심의 예방교육 활동 권장, 학생자치회를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 활동 등을 활용하여 실시
 - 학생의 보호자: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실시

• 내용(「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





대상	내용
교직원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③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의 보호자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④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⑤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7편

자료명		QR코드
학생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동영상 교육자료(유치원·초등 저학년용)* * 영상의 내용은 동일하며, 마지막 인사 멘트만 다름.	 <유치원> <초등저학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동영상 교육자료(초등학교 고학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동영상 교육자료(중학생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동영상 교육자료(고등학생용)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동영상 교육자료(유·초등학교 학부모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동영상 교육자료(중·고등학교 학부모용)	
교원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동영상 교육자료(교원용)	

-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 4종

자료명	QR코드
한눈에 보는 교육활동 보호 카드뉴스	
교원 마음건강 안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응대 안내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자료실

II

교권보호위원회



1장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교원지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3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교육청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할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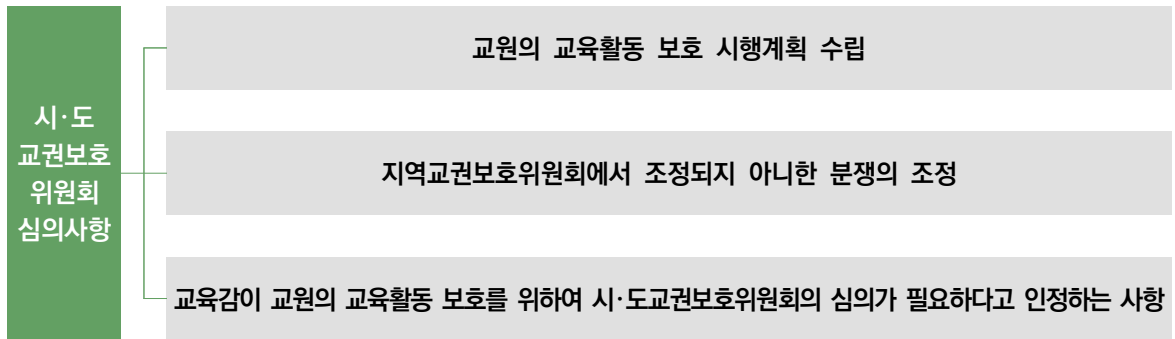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2장 교권보호위원회 종류

1. 시·도교권보호위원회

- 시·도교육청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2조)

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



나. 구성 및 운영(「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위원 정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 등	임기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중 호선	<p>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시·도 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함 (1회 연임 가능)
		위원 해촉	임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건의 당사자(해당 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이거나 해당 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다. 회의 소집 및 정족수(「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제5항)

회의 소집 사유	정족수
①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②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라. 제척 등 사유(「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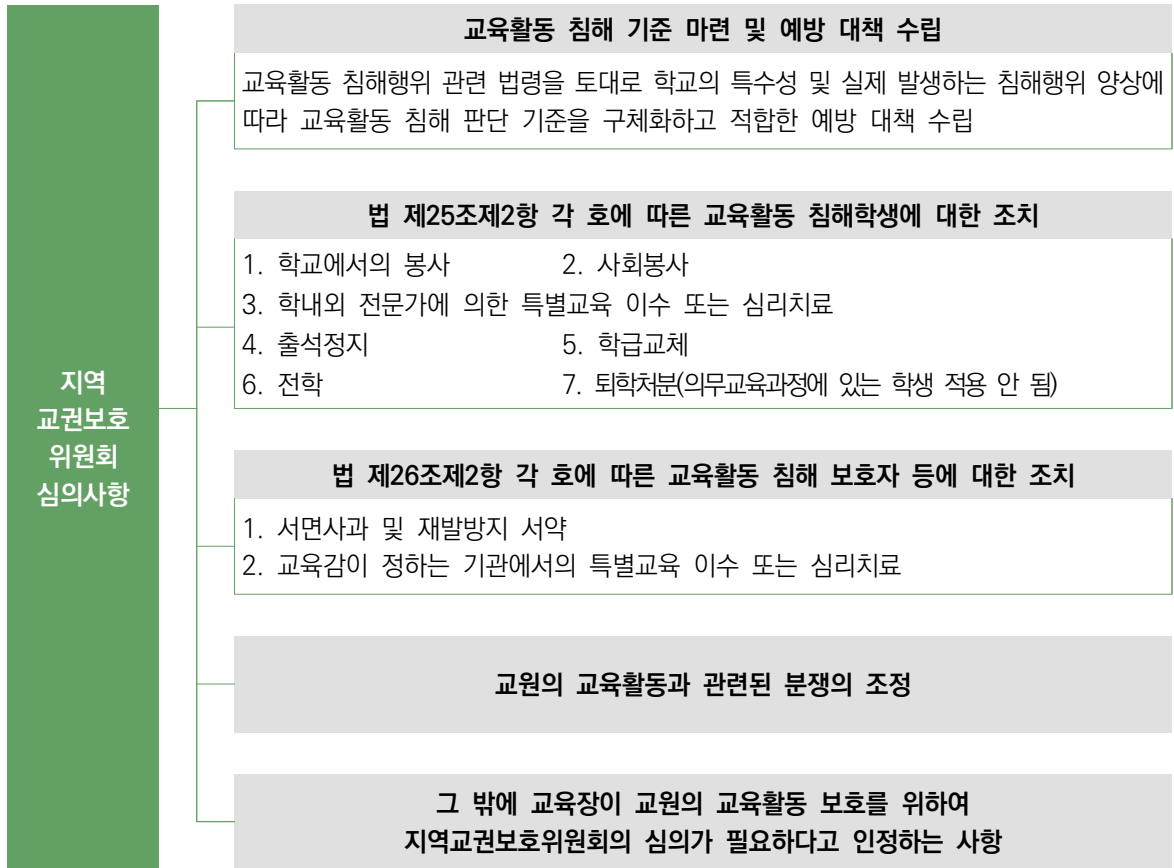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의무

- 제척 등 사유가 있는 위원은 개의정족수에 포함하여 개의하되,
 -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서 당연히 제외되므로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제척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사유에 해당한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4조).
 - 해당 안건의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시점까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



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위원 정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 등	임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 중 호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년 (1회 연임 가능)
		위원 해촉	임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건의 당사자(해당 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이거나 해당 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최초(재) 구성 시 심의·의결 사항
 - (의결안건)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 (보고안건) 교육장이 정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규정 등

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의2)

위원 정수	위원(장)	소위원회 역할	결과 보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 (교육장이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함 • 위원(장)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겸임 가능 • 교육장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위임 받아 심의·처리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에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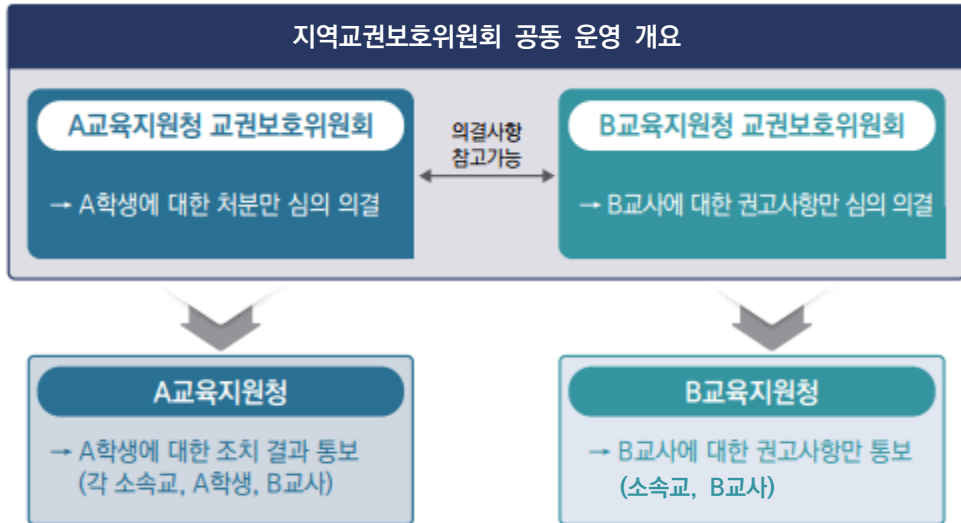
- 교육지원청에서는 소위원회 설치·운영 취지에 따라 학교급을 고려한 소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접수 사안의 학교급을 고려하여 해당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 교육장은 소위원회의 심의·처리를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 기타 관련 내용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표준안' 참고하여 운영한다.

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또는 소위원회) 공동 운영

- 피해교원의 전보나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의 전학이나 진학 등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등 복수의 교육지원청에 걸쳐 있는 사안(사안발생시 피해교원과 침해관련자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경우 포함)처리와 관련하여 양측 당사자의 편의 및 효율적 심의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또는 소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또는 소위원회)의 공동 운영은 의무는 아니나,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의 의견 진술과 청취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개최·운영하는 것이 권장됨
 - ※ 공동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다른 교육지원청과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또는 소위원회) 공동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공동 운영이란,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의 의견 진술과 청취의 과정을 복수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는 학생 및 교원의 소속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각각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 공동 운영 방식은 피해교원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견 진술·청취의 일정, 방식, 회의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나 공동 심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운영 절차(예)

공동 운영(1) 공동 운영 필요성 검토	》	공동 운영(2) 사전 협의	》	공동 운영(3) 공동 운영 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운영 필요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 운영 및 의견 진술·청취 절차 협의 자료 교환·안내 방식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운영 적용에 따른 준비 	
공동 운영(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운영⁵⁾	》	공동 운영 이후 절차(1) 개별 심의·의결	》	공동 운영 이후 절차(2)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자 의견 진술·청취 공동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 침해 여부 판단 및 조치 사항 개별 심의·의결 침해관련자 조치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교육지원청별 조치 결정 결과 통보 침해관련자 및 피해교원, 소속 학교에 각각 통보 	



※ (참고) A학생-A교육지원청 소속, B교사-B교육지원청 소속

5) 공동 운영은 의견 진술·청취 단계까지만 적용되며,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는 각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운영 관련 참고사항〉

-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교환 방식
 - 사안신고서는 피해교원 소속 학교에서 작성·제출하며, 학생·보호자 등의 의견서는 침해 관련자 소속 학교에서 작성·수합·제출
 - 사안 관련 추가 자료, 심의 의결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교환방법: 공문 시행을 통하여 서류(자료)교환
- ※ 타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서류 제출 요청 지양
- 조치 결정 통보: 조치 결정 결과는 각 교육지원청이 관할 학교와 학생(보호자 등), 피해교원에게 각각 통보
 - (침해관련자 소속 교육지원청) 조치결정 통지서에 교육장 명의·직인 날인 후, 침해관련자 소속교, 침해관련자(학생·보호자) 및 피해교원에게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결과를 통보
 - (피해교원 소속 교육지원청) 조치결정 통지서에 교육장 명의·직인 날인 후, 피해교원에게 교사에 대한 권고사항에 한하여 통보

Q. 피해교원과 침해관련자(학생)의 관할 교육지원청이 서로 다른 경우, 사안 관련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 사안 관련 서류 제출은 각 학교의 소속 교육지원청에 따라 분리하여 진행합니다. 피해교원 소속 학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사안 발생보고서, 참고인 진술서 등 피해 교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교원 소속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제출합니다. 침해관련자(학생) 소속 학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학생(보호자 등)의견서, 참고인 진술서 등 침해 행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침해관련자(학생) 소속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제출합니다.

Q.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이 동일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 있으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운영 사안은 아님), 사안 관련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A. 동일 교육지원청 내에서 피해교원과 침해관련자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 피해 교원 소속 학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사안 발생보고서를 제출하고, 침해 관련자(학생) 소속 학교는 학생(보호자 등)의견서, 참고인 진술서 등을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절차와 추가 증빙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소집 및 정족수(「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제5항)

회의 소집 사유	정족수
①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사안발생보고서 접수 후 21일 이내 조속히 개최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장 가능⁶⁾

* 사안이 복잡하거나 사안 조사 과정 중 새로운 증거의 발견, 학사일정, 피해교원,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 부여의 필요성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기 가능.

바. 제척 등 사유(「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19쪽 참고)



6) [부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표준(안) 참고

III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1장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시 유의사항

- (1)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 (2)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 시에는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 (4)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5)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침해 보호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 (6) 교육지원청 사안조사 및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시,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7)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교권보호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유보는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하여 추가 조사 후 재개최를 예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2장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1. 신고 및 접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람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 나.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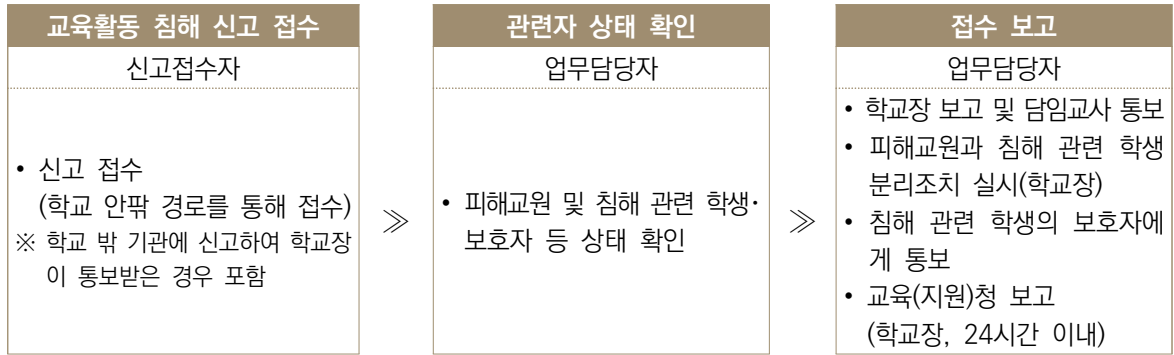
제24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해학생과 그 가족, 피해교원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 나.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및 분쟁 조정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가.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보고의무, 비밀누설, 축소·은폐 금지 의무

- 신고의무(「교원지위법」 제28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누구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보고의무(「교원지위법」 제20조)
 - 학교의 장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나 분리조치를 하였거나, 피해 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은 경우, 교육지원청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교육감은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인 경우, 교육부장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비밀누설 금지 의무(「교원지위법」 제30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담당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피해교원 또는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은폐 금지 의무(「교원지위법」 제27조)
 -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나. 신고 및 접수 절차



다. 신고 방법

- 학교 안
 - 업무 담당자, 교감·교장 등 관리자에 신고(구두, 메일, 전화 등)
- 학교 밖
 -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메일, 전화 등) (※ 75쪽 참조)
 - ※ (참고) 소속 지역의 지역번호 + 1395 교육활동보호 대표번호를 통해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전화 연락 가능(73쪽 참고)
 -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메일, 전화 등)
 - ※ (참고) 긴급상황 발생 시 112를 통한 범죄신고 가능

2. (사안 발생 시) 단계별 처리 방안

원칙	절차	업무 담당자 대응 요령	피해교원 대응요령	관련 주요 서식
신속한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및 피해교원 보호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교권 회복 조치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교원의 의사 청취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응급 상황 시 응급처치, 병원 후송 연계 조퇴, 병가, 특별휴가 등 안내(학교장) 등 교육현장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 관련자와 피해교원 분리조치(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침해행위 목격 학생 안정시키기 필요시 침해행위 관련 증거자료, 목격자 확보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관할청에 사안 신고 보고 (사안 접수 시 부터 24시간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사안신고서 작성 안내 및 접수(피해교원→학교) 범죄행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담당자에게 신고 필요시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 신고서 (서식1) 즉시분리의사확인서(서식3) 긴급조치 보고서 (서식2)
	사안 발생 보고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 면담 및 의사확인 의견서 접수 및 목격자 진술, 증거 수집 등 사안 발생보고서 제출(학교→교육지원청) - 사안 보고 후 5일 이내(주말, 공휴일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자 조치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견서 (서식4) 참고인진술서 (서식5) 사안 발생 보고서(서식7)
공정한 교권 보호 위원회 운영	사안 조사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확인 중대사안 발생보고(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교육부) 사안 조사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에 관한 자료 조사 쟁점사안 확인·점검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조사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 조사 보고서 (서식14) 중대사안보고서 (서식13)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 소집 운영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사안발생보고서 접수 후21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안건 상정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희망시) 침해 관련 학생, 침해 관련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관계 진술 서면진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석통지서(서식15) 의견서(서식4) 조치의결서(서식17) 서면의견서 (서식15-1)
	사안 종결 [학교,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14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결과보고(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회복 및 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치결정 통지서 (서식18-1, 18-2, 18-3) 결과보고서(서식19) 조치미이행 보고서 (서식12-1, 12-2)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이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를」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2항제4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⑪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⑫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⑬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제9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⑭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⑮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③ 지역교육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 3.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제2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② 삭제
- ③ 교육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학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

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학교 등)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제257조부터 제26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5일의 범위에서 추가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가. 초기 대응 및 피해교원 보호

1) 피해교원 대응요령

- 침해행위 중단 요청
- 동료교사 등 주변에 도움 요청 또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 학교 관리자 또는 업무담당자, 지역별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신고⁷⁾
- 침해 관련자와의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제출(서식3)
-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가능
- 부상 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Q.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고 의사나 사건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 사안신고서(서식1)를 당사자가 작성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2) 학교 및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지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 이행⁸⁾
 - 피해교원의 의사를 청취하여 필요한 조치 적극 시행
 - 응급 상황 시 응급처치, 병원 후송 연계
 - 조퇴, 병가, 특별휴가 등 안내(학교장)
 - 심리 상담, 법률상담, 공무상 병가 신청 안내 등
 - 상세 내용은 「IV. 1장. 1.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참조 등

- 7) 「교원지위법」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8)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
 - 침해 관련자와 피해교원 분리조치(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필요)
 - 필요시 피해교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 침해행위 목격 학생 안정시키기
- 학교장 판단에 따라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긴급조치 가능
- 필요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증거 자료, 목격자 등 확보
-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 학생의 침해행위와 관련한 제반 상황 알리기
 - 사안 처리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 및 필요시 면담 일정 협의

〈보호자 연락 시 참고사항〉

-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안 발생 개요, 경위 및 정도 등에 대해 전달한다.
- 피해교원과 기타 관련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보호한다.
- 발생 사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파악된 내용을 침착하게 전달한다.
- 보호자에게 사안 처리 절차 및 일정 등을 안내하여 향후 진행 상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 관할청에 사안 신고 보고
 - 사안 접수 시부터 24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 보고*
 - * 유선·구두 보고 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서식1) 제출(이메일, 공문 등)
- 교육활동 침해 사안신고서(서식1) 작성 안내 및 접수
 - ※ 교육활동 침해 사안신고서는 피해교원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희망 시 필수 제출하되,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으로 24시간 이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유선·구두 보고 후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서식7)’ 제출 시 함께 제출 가능
- 범죄행위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 언론 등 대응 창구 단일화
- 피해교원 및 관련자에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 상세 내용은 “1. 2장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흐름도” 참조

Q.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사안 발생보고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추후에 구비할 수 있습니다.

Q.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교원에게 심리 상담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피해교원에 대한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에게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도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긴급조치(근거 : 「교원지위법」 제25조제9항~제13항)

- 긴급조치 결정권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
- 긴급조치 사유 및 대상
 - 소속 학생이「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긴급조치 주요 내용

긴급조치 범위* (제9항)	긴급조치 기간 (제10항)	긴급조치 전·후 절차 (제9항 후단, 제11항, 제12항, 제13항)	긴급조치 기간 출석인정 여부 (제1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학교에서의 봉사) • 제3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4호(출석정지) • 제5호(학급교체) * 상기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호의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조치 전) 제4호와 제5호를 하기 전에는 침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제공 • (긴급조치 후) 침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조치결과 통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조치 결과 보고 및 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일수 산입 가능

※ 제25조제4호 출석정지 조치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제25조제5호 학급교체 조치에 따른 학적변동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추인된 이후 반영. 학급교체 조치는 해당 학년도까지 유효함

- (의견 진술 기회 제공) 학교장은 출석정지(제4호) 또는 학급교체(제5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제12항)
 - ※ 제4호 및 제5호 조치 외 다른 긴급조치 전에도 가급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이 권장됨.
- (조치 결과 통지 및 징계) 학교장은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제11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보고 및 추인) 학교의 장은 긴급조치 부과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제9항) * '긴급조치 보고서(서식2)' 제출

- 긴급조치의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되기 이전의 학교장의 긴급한 결정사항이므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일부 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으로 결정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긴급조치를 종료 변경하라는 취지이며, 긴급조치 당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행한 긴급조치의 효력이 소급하여 부정되지는 않는다.
-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렸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추인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 종결) 긴급조치로 침해 관련 학생을 출석정지를 한 후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 사안이 종결된 경우,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긴급조치로 인한 결석 기간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결석 기간을 출석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제20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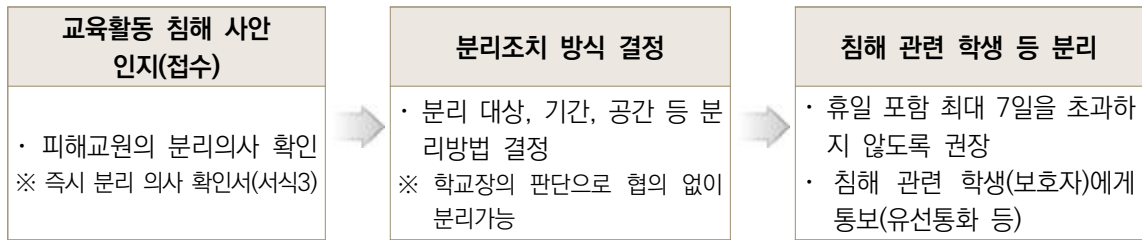
* 특별한 사유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교원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로 이미 교육활동 침해관련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예) 피해교원이 치유를 위해 특별휴가(또는 병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 분리조치의 취지

피해교원과 침해관련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통해 피해교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및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고조된 교육활동 침해 갈등 상황의 조속한 완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 분리조치 절차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 기간 결정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자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유의 사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 필요
- 분리조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실시를 권장함
- 분리조치 시행 당일은 분리조치 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토요일·공휴일도 분리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 학교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학교는 분리조치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조치 기간 동안 침해 관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필요
- 학교 내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할 경우, 분리조치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함

나. 사안 발생 보고

학 교

1) 피해교원 대응요령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2)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사안 파악
 - 피해교원 면담
 - 피해교원 상태 및 요청사항* 확인
 - * 필요한 보호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 분쟁조정 신청 여부 등
 - 사안 발생 경위 확인(☞)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전후 사정, 동기, 피해 정도 등
 - 피해교원에게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 작성 안내 및 필요시 문답서 작성
 -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 면담
 - 관련자 상태 확인, 사안 처리 절차 안내
 -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분쟁조정 의사 확인
 - 사안 발생 경위 확인(침해 관련자 의견서(서식4))
- 그 밖에 사안 파악
 -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등 관련 증거 수집
 - 기타 조치 양정에 필요한 사항 파악
 - ※ 침해 관련 학생의 평소 품행, 과거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징계를 받은 이력, 교우관계,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자의 평소 관계, 피해교원의 피해 정도, 침해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 간 사과나 합의 여부, 피해교원의 임신 및 장애 여부, 침해 관련 학생의 장애 여부 등
-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서류 작성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서식7) 작성
 - 침해관련자(학생, 보호자 등)의견서(서식4), 참고인 진술서(서식5) 첨부
 - ※ 참고인 진술서 작성 시 사안 관련 당사자의 개입 없이 공정하게 작성
 - ※ 분쟁조정 희망시 분쟁조정 신청서(서식6) 작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발생 보고(→교육지원청)
 - ※ 관할청(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 후 5일(주말, 공휴일 미포함)이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서식7),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서식4), ‘참고인 진술서’(서식5)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제출

〈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미희망할 경우 참고사항〉

- 침해 관련자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신고·접수되었다고 통보한 후에는 양측 관계자(피해교원, 침해관련자)가 사안 종결 확인서(서식8)를 작성해야 함
- 사안 종결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이 불가함

〈사안발생 보고를 위한 사안 파악 과정에서 주의사항〉

- 업무담당자는 사안처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한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인 관용이나 이해를 구하는 발언, 일방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징계를 운운하는 발언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침해 관련 학생 면담 시 학습권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녹음 등을 통해 해당 조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연계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답시에는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한다.
- 진술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주의하고 가능한 의문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파악한다.

〈피해교원,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 면담 시 주의사항〉

(피해교원)

- 초기 상담 시 피해교원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한다.
- 피해교원이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 상황과 욕구를 파악한다.
- 사안 처리 절차 및 내용, 진행 과정, 보호조치 등을 설명해 준다.

(침해 관련 학생)

- 초기 상담 과정에서 학생을 낙인찍지 않고, 침해 관련 학생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경청한다.
- 사안처리 절차 및 내용, 진행과정 등을 설명해 주고, 사안을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피해교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을 경우, 먼저, 피해교원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준비된 상황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한다.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

-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느끼는 감정은 수용하되,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침해 관련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주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안의 내용이나 정황에 대해 문의할 때는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만을 전달하고, 조치수위에 대해 언급하거나 동조·반박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주의하여 반응한다.
-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자녀(학생)의 침해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논쟁하기보다는 접수하는 태도로 반응한다.
- 침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피신청인 의견서 작성 방법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참석을 통한 진술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의견서(서식4) 제출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참석을 통한 진술이 본인의 정당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임을 안내한다.
- 침해 관련 학생 측이 피해교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을 경우, 먼저 피해교원 측에서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준비된 상황인지 알아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한다. 일방적인 사과는 피해교원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음을 안내한다.

-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을 안내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한다.

(공통)

-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 등이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침해 관련자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되며, 제출된 사안 조사 자료만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다.
 - ※ 교육활동 침해관련자(학생, 보호자 등)가 의견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학교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연락했던 이력 등을 발생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 다문화학생(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 및 학생의 보호자가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 각 당사자, 참고인(목격자) 등이 작성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다. 사안 조사

교육지원청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확인

- 필요시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 등) 추가 면담

※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긴급적 대면 면담을 활용하고, 서면조사 활용 시 한국어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번역된 조사지의 활용 및 모국어 작성을 허용할 수 있다.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조사지는 번역하여 활용

- 쟁점 사안 확인 및 점검
- 교육활동 침해 사안 검토
-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등 관련 증거 추가 수집
- 기타 조치 양정에 필요한 사항 조사

※ 중대사안이거나 사안 발생보고서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현장 방문 사안 조사

〈사안 조사 단계에서 주의사항〉⁹⁾

- 학교에서 제출한 사안 발생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 추가 조사
 - 진술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주의하고 가능한 의문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조사한다.
 - 사안 파악 단계에서 이미 확인이 완료된 내용은 중복하여 조사하지 않는다.

2) 중대사안 발생 보고(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교육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나.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9) 사안 발생 보고 단계에서 학교의 〈사안 파악 과정에서 주의사항〉 42쪽 참고

3)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서식14)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추가적인 피해교원·학생 및 보호자 면담, 사안 조사 등을 통해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필요성 등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조사와 확인

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침해사안 조치 심의)

※ ‘분쟁조정’ 신청 시 절차는 ‘3장’(63쪽) 참조. 분쟁조정 결렬 시 침해사안 및 조치 심의로 전환

〈운영 개요〉

단계		세부 절차									
지역교 권보호 위원회 소집· 운영	위원회 소집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1/4 또는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등	소집 요청 →	위원장	소집통지 → → 출석통지	각 위원 각 당사자					
	심의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각 위원에게) 제척·회피 여부 확인	→	(각 당사자에게) 기피 여부 확인					
		→	진술청취 질의응답	→	(신청시 분쟁조정 절차 진행)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심의	→	관련 학생(또는 보호자 등) 조치	→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사안 종결	처분 · 통지	위원장	의결서 →	교육장	결과통지 →	각 당사자 학교장					

※ 위원회 개의·심의·의결 시 ‘II. 교권보호위원회’의 정족수 참고

1) 위원회 소집 단계

- 안건 상정
 - 교육장 또는 재직위원 1/4 이상, 피해교원 요청 시 위원장이 회의 소집
 - 사안 발생 보고를 받은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신속하게 위원회 소집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사안발생보고서 접수 후 21일 이내 조속히 개최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장 가능
- * 사안이 복잡하거나 사안 조사 과정 중 새로운 증거의 발견, 학사일정, 피해교원, 침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 부여의 필요성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기 가능.
-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
 - ※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 의견서(서식15-1 활용)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Q.**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소집 사유가 발생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사안이 접수된 후 소집기한을 경과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 A.** 여기서 며칠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한 훈시규정이므로, 사안파악 및 조사 등에 필요하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집기한 이후에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회의소집이 위법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단계에서 주의사항〉

- 교육장은 신고 받은 사안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립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위해 사전에 수립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건별·관련 학생별로 안건을 세분화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출석통지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문자 등을 병행하여 가급적 출석을 유도한다.
- 참석을 위한 경우 학생은 출석인정 처리하며 교원은 출장 처리한다.(출장비 지급 여부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처리)
- 출석통지서에는 어떤 사유로 회의가 개최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안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당사자가 출석 거부 시 서면진술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서면진술도 거부시 진술포기서를 받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음을 기록으로 남긴다.

2) 심의·의결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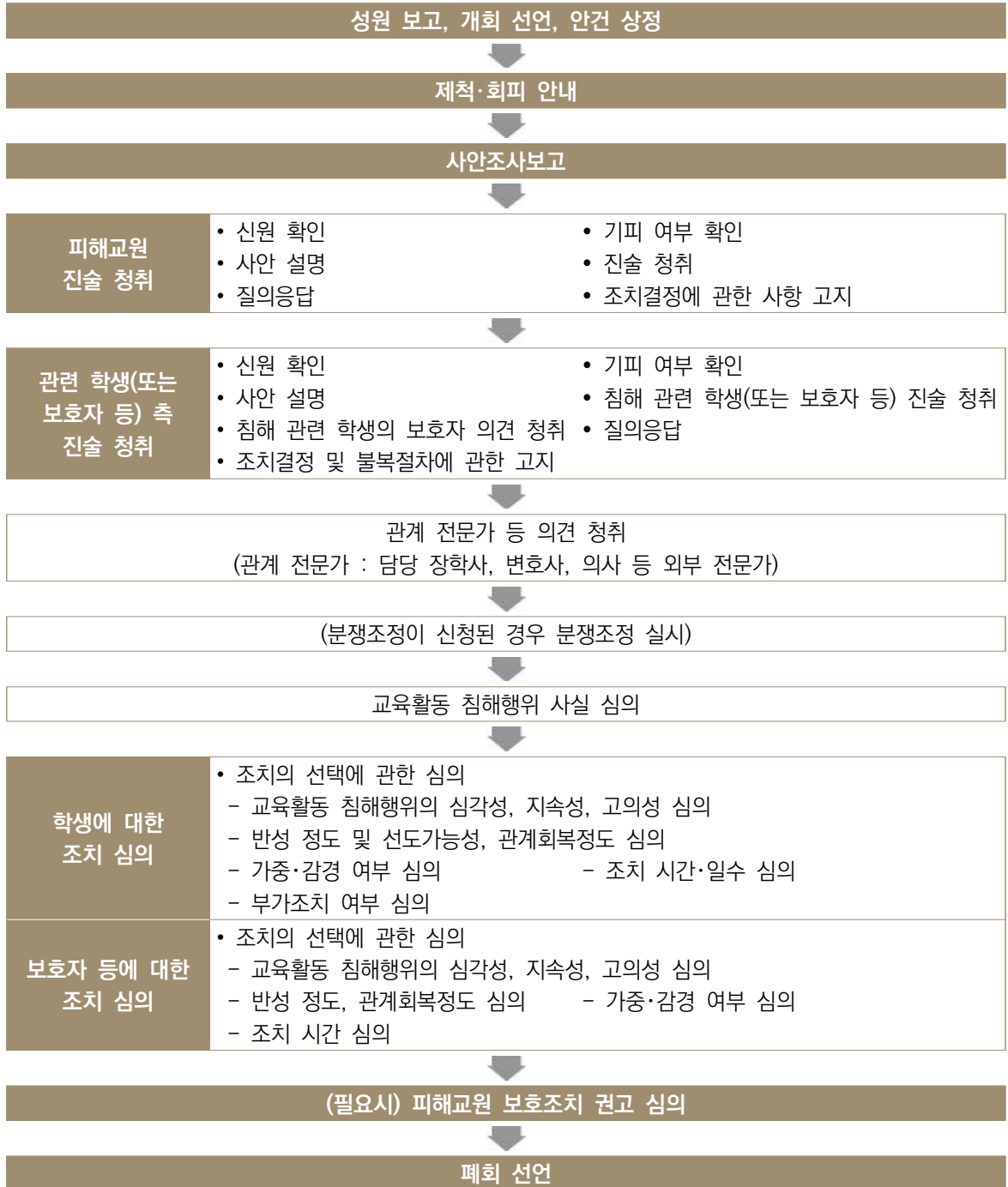
가) 심의 운영의 원칙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학생별로 사건을 나눠서 개별 심의함을 원칙으로 함
- 한 학생이 다수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병합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의 가능
- 다수 학생이 한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병합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의 가능. 피해교원 및 관련 학생 진술은 각 1회씩만 통합하여 진행하되 조치 심의는 개별 학생의 침해행위의 경중을 따져 개별적으로 심의·의결

- A학생이 B교사와 C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A학생의 'B교사에 대한 행위'와 'C교사에 대한 행위'는 병합하여 하나의 조치를 결정
- A학생과 B학생이 동시에 C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A학생의 C교사에 대한 행위'와 'B학생의 C교사에 대한 행위'는 구분하여 각 학생에 대해 별개의 조치를 결정

나) 심의의 진행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개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의사항〉

- 각 당사자 입장 시 기피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 각 당사자의 자유로운 진술 기회를 보장한다.
-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으로 관용과 이해를 구하는 발언, 일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관련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문제점을 인식시켜 책임의 자각과 반성을 촉구하고 피해교원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유도하되, 일방적으로 나무라는 발언, 인신공격성 발언, 심의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장애학생이 사안에 대해 설명, 의견 개진 등을 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Q.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학생의 ‘보호자’란 누구인가요?

A.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예 학생과 동거하는 조부모) 및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예 학생이 생활하는 아동 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을 말합니다.

Q.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가 아닌 지인이나 친인척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A.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가 아닌 지인이나 친인척 등은 행정절차에서 학생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Q. 침해 관련 학생이나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3호, 제2항,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를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교육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변호사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제출받아 변호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에 피해교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동석할 수 있나요?

A. 피해교원은 성인이므로 별도 동석자 없이 진술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가 비공개인 점, 법률대리인 아닌 자의 동석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참석이 어렵습니다.

다)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심의

- 각 당사자의 진술, 문답서 및 진술서, 목격자 진술 또는 진술서, 조사보고서 등 증거에 의하여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각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위원회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당사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낱말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 아님’으로 종결 가능하다.

참고 학생에 대한 조치 목적 및 방법 등

-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단순히 잘못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학생의 개전과 교육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므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조치의 결정

(가) 조치결정의 기준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의 기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른다.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②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③ 학생과 피해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④ 피해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⑤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별표]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및 선도가능성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매우높음	5	5	5	높음	0	0
높음	4	4	4			
보통	3	3	3	보통	1	1
낮음	2	2	2	낮음	2	2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없음	3	3

② 추가 판단 요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독조치 또는 1호·2호 부가조치 가능 - 4호·5호·6호 부가 조치 의무

※ 감경 및 가중 여부는 교원보호위원회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하며, 교육활동 보호 및 해당 조치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역교원보호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학교에서의 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호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	2호	8~10	사회 봉사
	3호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교외	6호	전학
		7호	퇴학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위의 1,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에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나) 조치결정의 방법

- 기본 판단 요소 중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0~5점 척도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학생과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는 0~3점 척도로 평가
- 각 항목별 점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총점에 해당하는 조치 선택
- 추가 판단 요소로 가중·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가중·감경 여부 결정 후 최종 조치 선택
- ‘학교에서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로 의결하는 경우 총 시간을, 출석정지로 의결하는 경우 총 일수를 함께 결정
- ‘특별교육’ 조치를 3호 조치로 부과(또는 추가 조치로 부가)하는 경우 총 시간을 함께 정하고, 조치 결과 통지서에 보호자 이수시간 명시(보호자 이수 시간은 학생과 다르게 부여 가능)
- ‘심리치료’ 조치를 3호 조치로 부과(또는 추가 조치로 부가)하는 경우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총 시간을 정하고, 조치결과 통지서에 보호자는 참여 명시(보호자 별도 시간 부여×)

<일반 사항>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시, 조치의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출석정지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¹⁰⁾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위원회는 교육적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치 결정한다.
- 출석정지 조치의 세부 운영 방법은 관련 법령과 학교 및 학생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습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교에서 결정한다.
※ 학생의 연령, 가정 상황, 피해교원과 분리 정도,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원소속 교실에 잔류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함.
- 교육장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교원지위법」 제25조제3항).
※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교원지위법」 제25조제3항) 전학조치를 우선 시행한 학교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행에 관한 내용을 전입교에 안내해야 함.
- 교육장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25조제4항).

10) (참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교육장은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 (특별교육) 조치 결과 통지서에 보호자 이수시간 명시(학생과 다르게 부여 가능)
(심리치료) 학생에게만 시수 부여(보호자 별도 시간 부여×, 보호자 동반·동행)

〈학생의 학적 변동 제한 및 조치 미이행 관련 안내 사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 변동을 제한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학적변동 시(상급학교 진학 포함) 전출교(이전 학교)에서는 전입교(학생의 現 소속 교)와 소속 교육(지원)청에 미이행 사실 안내 및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 ‘불가피한 사유’에는 졸업 또는 학년 진급으로 인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학년도 내에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

라)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결정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심의

- 각 당사자의 진술, 문답서 및 진술서, 목격자 진술 또는 진술서, 조사보고서 등 증거에 의하여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보호자 등이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술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의 참여를 통해 진술 기회를 확보하고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 각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위원회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당사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누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사안 아님’으로 종결 가능하다.

(2) 조치의 결정

(가) 조치결정의 기준

- 「교원지위법」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결정의 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② 보호자 등의 반성 정도

- ③ 보호자 등과 피해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④ 피해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⑤ 보호자 등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나) 조치결정의 방법

- 기본 판단 요소 중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0~5점 척도로, 보호자 등의 반성 정도 및 보호자 등과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는 0~3점 척도로 평가
- 각 항목별 점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 총점에 해당하는 조치 선택
- 추가 판단 요소로 가중·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가중·감경 여부 결정 후 최종 조치 선택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로 의결하는 경우 총 시간도 함께 정함

•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구분	보호자 등의 반성 정도	보호자 등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매우높음	5	5	5	높음	0	0
높음	4	4	4	보통	1	1
보통	3	3	3	낮음	2	2
낮음	2	2	2	없음	3	3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②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2호 ⇔ 1호

※ 제1호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	0~4	조치 없음
1호	5~1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호	12~21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Q.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된 모든 사안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해야 하나요?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용할 수는 없나요?

A.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 오인(誤認) 신고 ▲ 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심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안을 종결 처리할 때에는 피해교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신고 사실이 피해교원과 침해관련자 등 양측에 통지된 경우에는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 등 양측의 의사를 사안종결확인서(서식8)로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 관련 학생을 착각했거나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등 명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오인신고는 그 취지를 적은 피해교원의 사안종결신청서만으로 종결합니다.

Q. 교육활동보호 대표번호(지역번호+1395)로 사안이 접수된 경우의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시·도교육(지원)청에서는 상담내용을 피해교원의 관할 교육지원청과 소속학교로 알리고, 소속 학교장은 이후 사안처리 단계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Q.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과정에서 각 항목별 점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과정에서 각 항목별 점수는 각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고,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속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Q.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있나요?

A. 기본 판단 요소의 총점이 4점 이하이거나 기본 판단 요소 총점 상 학교에서의 봉사(5~7점)에 해당하나 학생에게 장애가 있어 감경사유가 있는 등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목적상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치없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권고전학" 등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임의로 여기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Q. 교육활동 침해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감경사유인 "장애"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학생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감경을 하여야 하나요?

A. 학생의 "장애"란 "신체적 기능의 결함이나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라는 뜻에서 넓은 의미의 장애를 의미하며, 반드시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등 가중·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가중·감경할지 여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가중·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가중·감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등의 "장애"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Q.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에 출결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에 따른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출석정지와 마찬가지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 기간이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 일수에 해당하더라도 출결특기사항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출결특기사항 항목은 공란으로 처리 합니다.

Q.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 및 조치 관련 출결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①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한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부가조치·분리조치’에 대한 출결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거법령	출결처리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교원지위법」 제25조 제6항	출석 인정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1~3호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침해학생에 대한 부가조치	「교원지위법」 제25조 제3항, 제4항	출석 인정
침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하는 교원에 대한 출장 승인은 가능하며, 출장비 지급은 학교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 관련 참고사항〉

- 회의록에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포함한다.
- 각 위원들의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Q.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A. 「교원지위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가족, 피해교원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마)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원지위법」 제18조제2항제5호)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원지위법」 제20조제1항)
- 교육활동 보호 교육 권고 등

마. 사안 종결 단계

1) 조치의 통지

-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치의결서(서식17)를 작성하여 해당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 조치의결서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
- 교육장은 위원회 조치 요청 후 14일 이내(「교원지위법」제25조제7항)에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결과 통지공문에 각 해당하는 결과통지서(서식18-1, 18-2, 18-3)를 첨부하여 각 당사자 및 피해교원의 소속학교에 서면으로 결과 통지한다.
- 학교장은 침해학생(또는 그 보호자) 및 보호자 등이 해당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조치미이행 현황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제출한다.(서식 11, 12-1, 12-2)
 - 처분 통지 90일 후 ‘미이행자’명단만 공문 보고

【참고: 조치 이행 관련 사항】

■ **침해 학생의 조치별 이행 내용**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심의 후	⇨	교육장→ 당사자 및 소속 학교	학교장→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14일 이내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

- (전학) 「교원지위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지체없이 이행
- (학교에서의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피해교원 보호 및 학생 선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체없이 이행
-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적 효과 제고를 위해 학교장은 학생이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

■ **침해 학생이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보고 학교장→교육장(교권보호위원회)	⇨	안내 교육장→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21일 이내		30일 이내 이행할 것 서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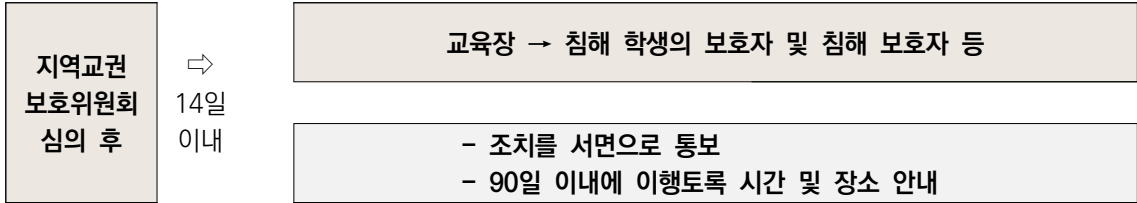
- (학교장: 미이행 보고) 침해 학생이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교권보호위원회)에 공문 보고

- (교육장: 이행 독려) 학교장의 보고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안내

- 조치를 30일 이내 이행할 것
- 미이행 시 거부·기피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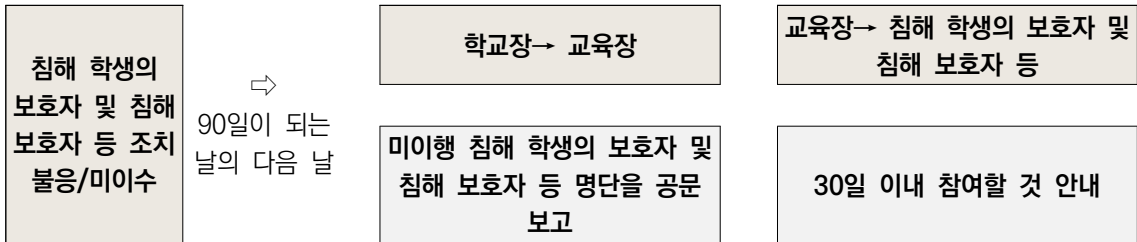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가중)** 교육장 독려 후에도 미이행 시 위원회 개최 가능, 「교원지위법」 제 25조제8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같은법 제25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 가능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가중 조치 심의 시,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 제공

■ 침해 학생의 보호자 및 침해 보호자 등의 조치이행



- 침해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침해 보호자 등은 「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시 90일 이내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방법(시간, 장소 등) 및 기한 안내

■ 침해 학생의 보호자 및 침해 보호자 등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 **(학교: 미이행 보고)** 침해 학생의 보호자 및 침해 보호자 등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미이행한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보호자 등의 명단을 교육장(교권보호위원회)에 공문 보고
- **(교육장: 이행 독려)** 학교장의 보고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 및 보호자 등에게 다음의 내용을 안내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30일 이내 이수할 것
-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교육장: 시도교육청 통보)**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교육장은 미이행자 명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
- **(교육감: 과태료 부과)** 교육감은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 관할 교육지원청의 심의결과 보고 시기는 시·도교육청의 지침, 여건에 따라 정하되,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후속조치

- 당사자가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 피해교원에게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과 치유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재발방지조치 및 추수지도를 한다.
- 당사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복귀 지원을 한다.
- 조치결과에 이의제기 시 불복절차를 안내한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한다.

4) 보호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참여하지 않은 경우 교육장은 이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도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조치에 대한 구제절차

1) 행정심판

가) 개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해당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나) 대상

-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침해 보호자 등은 교육장의 조치(「교원지위법」제25조제2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교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사안 아님’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의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청구기간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 교육장 명의를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 ※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됨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를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

라) 집행정지 결정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2) 행정소송

가) 개념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절차이다.

나) 대상(「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침해사안 아님’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원고가 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된다.

다)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라) 집행정지 결정(「행정소송법」 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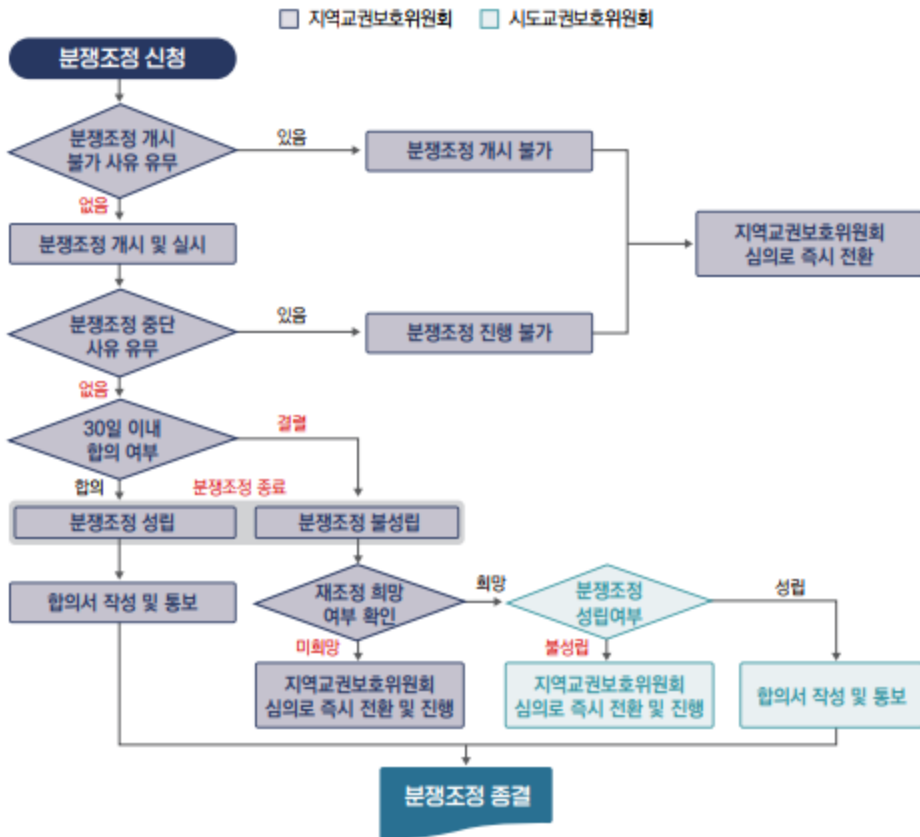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3장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분쟁 조정

가. 분쟁조정 개요

- (의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조정자가 되어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해 상호 화해 및 합의로 이끄는 절차이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 분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급적 교육지원청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
 - 특히, 보호자 등 학생이 아닌 사람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적용 가능
- (유의) 분쟁조정은 양당사자의 분쟁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나. 분쟁조정 흐름도



다. 분쟁조정 절차 개요

절 차	세부 사항
분쟁조정 신청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 신고시, 피해교원 분쟁조정 의사 확인(서식1) • 발생 보고서, 당사자 분쟁조정 신청 여부 확인(서식7)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절차 안내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식6)
↓	
분쟁조정 개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 확인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 통지 • 출석 불능 시 분쟁조정 연기 신청 → 분쟁조정 기일 재지정 • 필요한 경우 분쟁담당자 지정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
↓	
분쟁조정 실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p>〈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의 성질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조정 개시 후 합의되지 않은 채로 30일이 지난 경우 - 사안이 종결된 이후 등 분쟁조정 신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	
분쟁조정 종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의견 및 요청사항 청취 - 조정안 제시 등 조정 노력 • 분쟁조정 협의록(서식21) 작성
↓	
분쟁조정 성립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성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서(서식20) 작성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당사자에게 합의서 통보 • (분쟁조정 불성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종료 가능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불성립 통보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심의로 전환 안내 - 재조정 희망 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2차 분쟁조정 신청 가능 안내 • 관할 시·도교육청에 조정결과 보고

라. 분쟁조정 절차

1) 분쟁조정의 신청

- 분쟁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2) 분쟁조정의 개시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 통보
-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 기일 재지정

3) 분쟁조정의 개시 거부 및 분쟁조정의 중지

〈분쟁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분쟁조정 개시 후 합의되지 않은 채로 30일이 지난 경우
6. 사안이 종결된 이후 등 분쟁조정 신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위 사유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 가능
-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

4) 분쟁조정의 실시

-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 가능
- 진술 청취 후 양보·화해·합의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 시도

5) 분쟁조정의 종료

①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합의를 3부¹¹⁾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확인, 서명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교부
- 합의는 민사상 화해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되며 종전의 법률관계를 주장하지 못함
-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심의로 진행됨을 안내

11) 교권보호위원회에 한 부 보관하고, 양 당사자에게 한 부씩 교부

〈합의서의 기재사항〉

1. 당사자의 성명과 소속
2. 조정대상 사안
3. 조정의 결과
 - 가. 합의 내용(침해 사실 인정, 사과 및 재발방지, 치료비 등 손해배상, 고소 취하 등)
 - 나. 이행 방법(이행 기한, 계좌번호, 민·형사·민원 등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등)
 - 다. 이행 확보 방안(미이행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심의 진행, 위약금 약정 등)

②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 종료 가능
- 분쟁조정 종료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심의로 전환 안내
- 재조정 희망 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분쟁조정이 결렬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침해 여부 및 조치사항을 심의하여 결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시 주의사항〉

- 사안조사 단계에서 당사자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
-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에 동의한 경우 분쟁조정 개시
- 학생의 경우에도 분쟁조정 가능
- 분쟁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
- 합의사항에는 사과나 화해, 손해배상, 재발방지 약속 등이 가능
- 합의사항은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됨

IV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1장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 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③ 관할청은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가. 보호조치의 유형(「교원지위법」 제20조)

-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심리 상담 및 조언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은 각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활동 보호 전담상담사를 통하여 전화 및 대면 등으로 심리 상담
-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기관이나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여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 지원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은 후 관할청에 치료비 청구 가능
- 공무상 병가
 - 연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참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203호(2026.1.1.)]

(나) 아래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 공무상 요양 승인
 - 국·공립학교 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 승인에 따라 연 180일의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통해 승인 시 요양급여 지급 가능

참고 기간제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1. **(기간제 교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2. **(사립학교 교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전보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전보 요청 가능

참고: 관련 법령 등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특별휴가(「교원지위법」 제23조)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때는 5일의 범위에서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

참고: 관련 규정 등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104호, (2026.2.27.)]

제8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학교 등)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제257조부터 제26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5일의 범위에서 추가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특별휴가는 피해교원을 분리 보호하기 위함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안인지(발생) 즉시 사용이 적절
 - ※ 예 5월 1일 사안 발생→ 6월 1일에 특별휴가 사용은 부적절
- 특별휴가는 피해교원 회복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연속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시간 단위, 일 단위 등으로 쪼개어 사용은 부적절
- 특별휴가는 기본적으로 5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 가능하며, (의무적으로 5일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때는 5일의 범위에서 추가 부여가 가능하다.
- 특별휴가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이 국외 출국 등 목적 외로 사용 금지
- 학교장이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할 경우(단, 객관성, 타당성 확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사안 신고 후 21일)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의 사용 시기 및 방법을 달리하여 승인 가능

Q.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인 특별휴가의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특별휴가를 승인하였는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기존 결재한 특별휴가를 취소하고 병가나 연가로 정정합니다.

Q. 피해교원의 요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교원의 의사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교원지위법」 제23조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특별휴가)에 따라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라고 판단한다면 예외적으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 신청 시에도 동일)

다만, 이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접수하여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사안 발생보고서, 사안 종결 확인서 등을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특별휴가를 사용한 교원은 동일 학생 및 유사 사안 재발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한 경우에만 특별휴가 인정

Q. 피해교원이 부여된 특별휴가 사용 후에도,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여된 특별휴가 사용 후에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6일 이내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Q.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특별휴가 또는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분쟁조정 신청 시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라고 판단한다면 예외적으로 '특별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상 병가의 경우, 보다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고, 공무상 병가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심의절차로 전환하여, 해당 사안에 엄정히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나. 보호조치 비용(「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9조)

1) 보호조치 비용 범위

- 심리 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약품 공급 등의 비용

2) 보호조치 비용 신청 절차

- 보호조치 비용 부담을 신청하려는 피해교원 또는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보호조치 비용 부담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3) 보호조치 비용의 가해자 부담 원칙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
-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

Q.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으로 사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치료 및 요양에 사용된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치료비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쟁조정시 치료비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는 그에 따라 이행합니다.

4) 구상권 행사의 예외

- 보호자 등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지역번호)+1395 교육활동보호 대표번호

- 교육활동보호 대표번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원이 소속된 시·도교육청의 '(지역번호)+1395'로 전화를 걸면 시·도교육(지원)청별 교육활동보호 지원 창구로 직접 연결해 주는 번호입니다.

※ 이용방법: 업무시간 중 유·무선전화로 소속 시·도교육청 지역번호+1395를 눌러 이용 가능

예) 인천: 032-1395

※ (지역번호) + 1395 외,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 전화번호를 통한 지원 요청도 가능(75쪽 참고)

- 주요 업무(※ 세부 내용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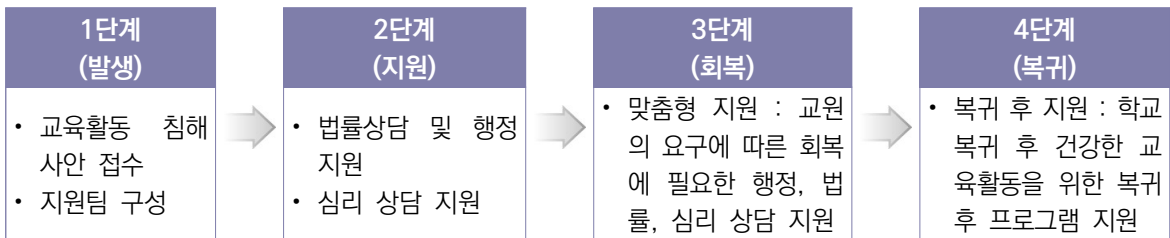
-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접수
- 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건강·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 및 담당자 연계
- 교육활동 보호 법령 및 매뉴얼 등 공통 제도 안내
-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 사항 안내
-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안내 및 담당자 연계
-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 기타 교권 보호와 관련된 시도별 지원 제반 사항

3.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교원지위법」 제29조)

가. 역할과 기능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치유·회복·복귀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피해 학교 및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법률 자문
- 교육활동 보호 자료 개발
- 교육활동 보호 예방 연수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외에 교직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교원의 교육력 회복 지원

나. 단계별 지원 내용



다. 주요 운영 내용

-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 지원
-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업 운영
 - 업무담당자,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보호 연수
 -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 의사소통 향상, 대인관계 향상, 교육활동 침해 대처 등 코칭·심리 상담 지원
 -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교권전담변호사 및 법률지원단),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담·지원 및 법률 정보 제공, 법률 상담료 지원 등
 -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 운영
 - 교원 심리 상담(치유) 지원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피해교원의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 교육활동 침해 교원, 교직 스트레스 교원, 심리적 소진 교원, 학교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개인 심리 상담 지원
 -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온·오프라인 운영
 - 치유·회복·복귀·성장에 따른 집단상담 지원
 - 교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 ※ 각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시·도교육청별 교육활동보호센터 현황(주요)

(2026년 1월 기준)

구분	주소(센터명/누리집)	대표전화번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 홈페이지 http://forteacher.kedi.re.kr/	(지역번호) + 1395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48 학교보건진흥원 414호 http://www.sen.go.kr/ 「교육활동보호센터」	02-399-9702~10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7 메디컬시티 10층 https://www.pen.go.kr/ 「교육활동보호센터」	051-862-1122 (내선1~9)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21 교육연수원 사도관1층 http://www.dge.go.kr/forteacher/ 「교육권보호센터」	053-231-0540~4. 0547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91번길 71 현영빌딩 4층 http://www.ice.go.kr 교육활동보호담당관(「교육활동보호센터」)	032-1395 032-550-1772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 번영로 98 서부교육지원청 http://forteacher.gen.go.kr 「학교지원센터(서부교육활동보호센터)」	1644-9575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111 동부교육지원청 http://forteacher.gen.go.kr 「학교지원센터(동부교육활동보호센터)」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로2(갈마동 114-26) https://www.dje.go.kr/eduhealingnew/main.do 「에듀힐링센터(대전 교육활동보호센터)」	042-713-9372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증가로 406-21(울산비즈파크 C동 1층) https://www.use.go.kr 「교육활동보호센터」	052-243-8721~3

구분	주소(센터명/누리집)	대표전화번호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06호 https://www.sje.go.kr/forteacher 「교육활동보호센터」	1522-9575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경기도교육청 https://more.goe.go.kr/eapc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1600-8787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http://www.gwe.go.kr/ 「교육활동보호센터」	033-259-0819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북교육청 https://www.cbe.go.kr/dept-26 「교육활동보호센터」	043-290-2251~8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흥복읍 선화로 22 충남교육청 http://www.cne.go.kr 「교육활동보호센터」	1588-9331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874 https://www.jbe.go.kr/human/index.jbe 「전북교육인권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063-237-0343~4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여진누리길 10 전남교육청 https://www.jne.go.kr/thsupport/main.do 「교육활동보호센터」	061-260-0531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 198-14(남통동)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본관 1층 http://www.gbe.kr 「교육활동보호센터」	054-450-4363~4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경남교육청 제2청사 2층 https://www.gne.go.kr/forteacher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1811-767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별관 1층 https://www.jje.go.kr/forteacher 「교육활동보호센터」	1599-9179 064-710-0075

2장 그 밖에 사법적 조치

가. 형사소송(고소와 고발)(「교원지위법」제20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등 각종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교육감(관할청) 형사 고발〉

1) 개요

- 교육감(관할청)은 형사 고발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교육감은 「교원지위법」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해당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고발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고발 기간(예시)

-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날 또는 피해교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고발을 권고할 수 있다.
- 교육감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고발해야 한다.

3) 고발 요건(예시)

가) 형식적 요건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 단,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한 범죄. 예: 모욕죄 등)는 고소권자인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여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교육감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침해행위자가 학생인 경우,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사안의 성격 및 학생의 연령·발달 정도·책임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형사절차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학교장 통고 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우선 적용하고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실질적 요건

- 위와 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였고, 교육감이 수사기관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고발 필요성 판단 시 고려 요소
 - 고발의 필요성(행정적·교육적 조치만으로는 재발 방지 및 조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 고발 요건의 충족성(범죄 구성요건 해당 가능성, 증거 확보 가능성 등)
 - 침해행위의 중대성·심각성(피해 정도, 반복·지속성, 파급효과 등)
 - 침해행위자의 고의성 및 행위 인정 여부
 - 피해교원의 처벌/불처벌 의사

4) 교육감 형사 고발 시 유의 사항(피해교원의 역할)

- 교육감(관할청)이 고발의 주체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해 피해교원의 자료 제공 및 진술 협조는 수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피해교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작성·보유 중인 자료(생활지도·상담 기록, 민원·면담 기록, 문자메시지, 학급일지, 메모 등)를 정리하여 수사기관(또는 관할청)에 제공함으로써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에 협조 필요
- 한편, 학교·교육청 등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문서(공문서) 및 시스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관 자료를 제출하려면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수사 목적의 자료제출요구 공문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요청에 따라 기관 명의로 제출 하여야 함
- 피해교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할 경우 사실에 기초하여 진술함
- 형사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고소인만 가능하다.(「형사소송법」제245조의7)

나. 민사소송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교원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학교장 통고제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학생에게 「소년법」상의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다.

참고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방법
 - 학교장이 관할 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의 내용을 서면(통고서)으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함
 - 원칙적으로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임
- 장점
 -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라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전과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징
 - 학생의 비행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교육, 치료 및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함
 - 학생이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해 비행 초기에 선도 효과를 높일 수 있음

3장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 관련 지원 제도

관련 법령 등

「교원지위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교원지위법」 제17조)

-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법에 따른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판단 여부를 담은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절차 마련

[참고] 관련 법령

「유아교육법」

-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아동복지법」

-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조사)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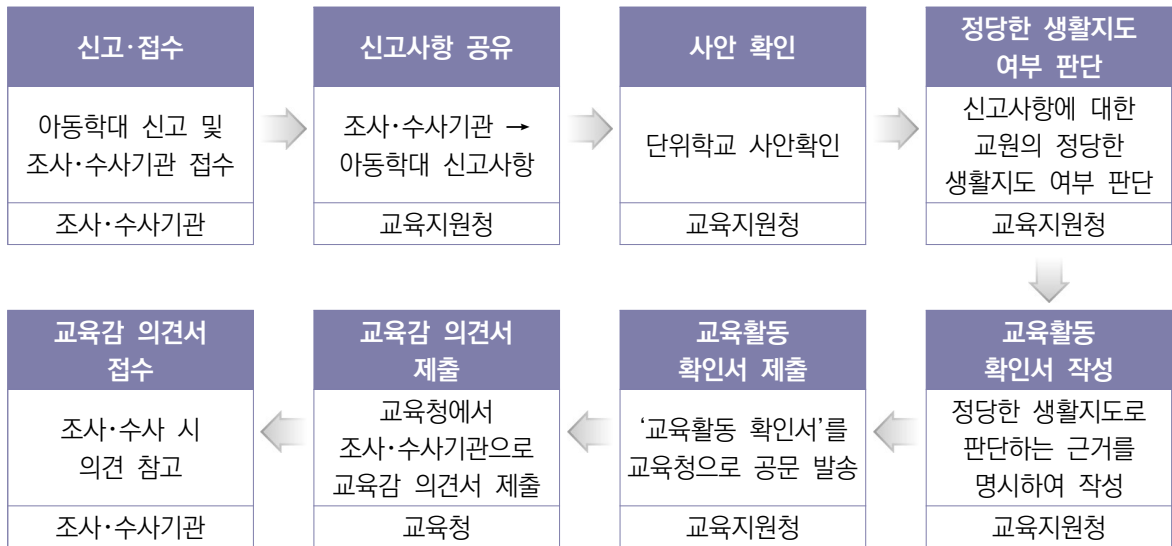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1) 교육감 의견 제출 방법 및 일정

- ①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 정보 공유¹²⁾
- ② 교육지원청은 신고사항을 공유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사안 확인
- ③ 신고사항을 공유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교육청으로 '교육활동 확인서' 상신
- ④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이 신고사항을 공유받은 날부터 7일 이내¹³⁾(공휴일 제외)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을 서면 제출

[의견 제출 흐름도]



12) 신고된 교원은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신청\(https://www.open.go.kr/\)](https://www.open.go.kr/)을 통해 신고 사안을 알 수 있고, 관련 자료를 관할 지원청에 제출하여 확인서 작성에 협조할 수 있다.

1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2)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참고 기준

- ① 법령과 학칙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제3호
 - 학칙(유치원규칙) 및 그 외 관련 법령
- 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
- ③ 학급 규칙 및 교육주체 간 협약
- ④ 교원-보호자 등과의 사전 협의 사항 등

나.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교원지위법」 제21조)

- 교육활동과 관련(학교폭력 업무 포함)하여 분쟁이 발생한 교원 대상으로 법률지원단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지원 실시
 -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발생(고발, 소송 등)시 기관 차원의 법률 자문 및 법무 지원 제공
 - 위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특이 민원 등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고소·고발 등) 추진
 - 관련 부서(기관) 등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지원
 - ※ 각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 교원보호공제사업(「교원지위법」 제22조)

-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의 범위를 확대한 교원 대상 공제사업 운영

•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한도	주요 면책사유
배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사고당 2억5천만원 한도 ※ 소 제기 전 합의 시 1사고당 1억5천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법, 제도에 따른 공제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민형사 소송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분쟁 발생 시, 피공제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형사 사건의 소송비용 및 사건처리비용 ※ 가압류가처분신청·소제기·형사고소/고발은 반복적, 계속적 교육활동 침해행위 배제를 목적으로 인정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보수 한도액 별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소송: 유죄 확정 시 민사소송: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상해치료 심리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소진교원 등 대상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과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 총 300만원 한도 내 소진교원 심리 상담 및 조언비 : 10회 범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한 내용의 보호조치 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받은 경우
재산상 피해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공제자의 소지품이 훼손된 경우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물품 당 200만원 한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지품 등의 보관·관리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위협대처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행, 상해 등 중대사안 시 긴급 경호 ※ 신체적 위협이 피공제자의 교육활동과 관련없이 발생한 경우에도 교육활동 중인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우 경호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사고당 20일(2인이 동시에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사고당 최대 10일(2인×10회)) 위협이 지속되거나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분쟁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사안 발생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도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송이 진행 중인 분쟁

※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임.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음.

<별첨>

변호사보수 한도액

분류	상세구분	단위 (사건/피공제자)	한도액(원)	비고
가압류/가처분	신청	1건당	1,100,000	
	이의신청/취소신청	1건당	2,200,000	
	해당공탁에 따른 취소신청	1건당	550,000	
민사소송	2,000만원 이하	1인당	3,300,000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인당	5,500,000	
	4,000만원 초과	1인당	6,600,000	
형사고소(고발)	고소(고발)대리	1건당	3,300,000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공제자에 대한 증인신문, 의견서 제출 등을 위한 변호사 자문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단계 포함하여 1건당 660만원(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전 심급 합산)
형사소송	수사	1인당	3,300,000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 학교 소속 피공제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피공제자 1인당 2,200,000원			
	소송	1인당	6,600,000	수사단계 포함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 학교 소속 피공제자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공제자 1인당 3,300,000원			

4장 교육활동 침해 이외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

-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징계 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관한 문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도를 통해 처리 가능(각 제도의 세부 사항은 소속 교육(지원)청 소관 부서 및 국가인권위원회로 문의)

구분 \ 종류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구대상		국·공립교원	국·공립, 사립교원	국·공립, 사립교원
청구내용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 기타 신상문제 등 여러 고충에 대한 심사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권익 구제	인권침해, 차별행위
결정의 효력		권고	공·사립 모두 기속력 있음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
불복할 경우	청구 인정	법적인 기속력은 없어 결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복 절차(행정소송 등) 없음	공립은 불복 불가 사립은 소청심사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가능	-
	청구 기각		공립은 행정소송 사립은 소청심사위 상대 행정소송과 법인 상대 민사소송 가능	
기한		없음	30일 이내	없음
단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시·도교육청)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교육부)	-	-
근거		교육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V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개념

- 직무집행중인 국·공립학교 교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그 직무집행은 적법한 경우라야 한다.¹⁴⁾ 국·공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은 직무집행의 범위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¹⁵⁾, ‘폭행’과 ‘협박’은 관련 유형에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¹⁷⁾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유·무형적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¹⁸⁾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학생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괴롭힌 학생을 혼내기 위해,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와 관련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향해 다 때려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 학생의 보호자가 사립학교에 체격이 크고 몸에 문신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들어와 수업 중인 교사를 불러오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경우

다. 사례

교원이 학교 정문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교통 정리와 등교지도를 하던 중 차량 하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하차한 학생을 지도하였다. 그 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보고 교원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칼로 배를 찔러 버린다”라는 등 교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였다.

14)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15)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16) 유형 ‘3. 폭행’ 개념(92p), ‘4. 협박’ 개념(93p) 참조
17)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참조
18)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도18970 판결 참조

- 위 사안에서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형법」 제11장(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개념

- 무고의 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 고발, 진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56조).
- 신고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신고 내용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판단하며,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¹⁹⁾
- 또한,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신고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²⁰⁾
- 그러나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신고를 강행했다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²¹⁾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에 불만을 품은 학생의 보호자가 자녀가 신체적 학대를 받은 적이 없음은 교내 CCTV로 확인했음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경우
- 국공립학교 교원이 촌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보호자가 국민신문고에 거짓으로 ‘교사가 촌지를 요구하니 징계나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19)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도2963 판결 참조)

20) 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

2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참조

다. 사례

한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때렸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교육감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당시 수업에 참여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교사가 학생을 때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해당 보호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에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며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 위 사례에서 보호자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통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사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교육청에 허위 사실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개념

- 상해란, 타인의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은 유·무형 / 직·간접 행위를 불문한다.
-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²²⁾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도 실제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²³⁾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손으로 교원의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진 경우(상해)
- 책상 또는 의자를 밀쳐 교원에게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입게 한 경우(상해)
- 지속적인 폭언과 고성으로 인해 교원이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겪게 된 경우(상해)
- 교원의 신체를 직접 때리거나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경우(폭행)
- 교원의 목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폭행)
- 교원을 때리려고 팔이나 다리를 휘둘렀으나 직접 접촉하지는 않은 경우(폭행)
- 교원의 신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폭행)

22)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판결]

2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다. 사례(폭행)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학칙으로 금지된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을 지도하며 해당 휴대전화를 분리 보관하였다. 이에 격분한 학생은 교실에 있던 의자를 들어 교사를 향해 던진 뒤 교실을 나갔다. 다행히 의자는 교사를 살짝 비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피해교원과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교원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교원의 신체에 맞지 않았다고 하여도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사안은 폭행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4. 「형법」 제2편제30장(협박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개념

-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해악의 고지는 실제로 그 내용이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언어는 물론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통한 협박도 가능하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교원에게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밤길에 쫓아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는 경우
- 교원의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해치겠다는 문자를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경우
- 보호자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교문 앞에서 자해하겠다고 소동을 피우는 경우

판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한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나,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칼을 들고 자해하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자해행위 시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Q.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A.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아동학대 고소와 민원(진정)을 예고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권리를 남용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²⁴⁾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폭언을 수반하여 고지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상당한 수단이 아닌 경우 권리의 남용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Q. 실제 행동으로 옮길 마음이 없는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행위자가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행위자의 언행이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²⁵⁾

5. 「형법」 제2편제33장(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이 있다.

가. 개념

-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²⁶⁾ 또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²⁷⁾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히’ 이뤄져야 하는데, 특정 소수(한 사람이어도 해당)에게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²⁸⁾

24)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94 판결 참조

26)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20890 판결 참조

2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참조

28)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대화 당사자 간 1:1로 이루어진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처럼 공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나, 그 발언의 정도에 따라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의 다른 유형의 침해행위로 다뤄질 수 있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담임교사가 특정 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명예훼손)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은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가정사를 유포한 경우(명예훼손)
- 수업 중 학생이 교사에게 ‘○○놈’, ‘○○년’, ‘○랄한다, ○새끼’ 등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경우(모욕)
- 교원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거나,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어 부르고 다니는 경우(모욕)
- 특정 교원에 대하여 ‘멍청하다, 함량 미달이다’ 등의 비하 발언을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유포하는 경우(모욕)
- 다수 학생이 볼 수 있는 SNS 게시판에 교원을 비하하는 말과 욕설을 올려 유포하는 경우(모욕)²⁹⁾

Q. 교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형사 고소, 민원 제기 행위를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 있는가?

A.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그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수사절차나 민원 처리 절차에서 그 정보가 담당자 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로 형사고소나 민원을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무고죄로 다뤄질 수 있다.

다. 명예훼손 사례

중학교 2학년 수학 지필평가에서 학생 A가 고득점을 받아 같은 반 학생 B는 “학교 수학 교사가 학생 A의 사촌이라서, 시험 전에 문제를 미리 빼돌려 주어 학생 A가 고득점을 받았다”라는 허위 사실을 반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

- 다른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원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위 사안에서 B 학생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교사의 사회적인 평판을 훼손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다만, 명예훼손 행위가 성립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 B 학생의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 「형법」의 모욕죄 규정이 적용된다.

바. 모욕 사례

수업 중 학생이 엉뚱한 말을 반복해 수업이 방해되자 교사가 학생에게 “이상한 말을 멈추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이에 화가 난 학생이 교사 앞에서 “○랄하네. 씨○년. ○갈네” 등 욕설을 했고, 이를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들었다.

이후 학생은 “선생님한테 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이었다”고 변명했으며, 학생의 보호자 또한 별것 아닌 일에 교사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오히려 불만을 제기했다.

- 「형법」상 모욕은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혼잣말로 한 발언이라도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
- 위 사안에서 학생이 발언한 부분은 교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그 발언 대상이 교원이라는 것을 다른 학생들이 듣고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다만, 이에 이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뿐이라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욕으로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는 볼 수 없다.

6. 「형법」 제2편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개념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교원의 지도에 반항하며 책상, 창문, TV 등 학교의 기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 교원의 출석부나 교무수첩의 일부나 전부를 찢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 교원이 작성한 컴퓨터 파일을 일부러 삭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판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이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가. 개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는 성폭력범죄 행위로서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배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배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경우³⁰⁾ (강제추행)
-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학생이 수업 중 교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
- 학생이 교원의 사진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SNS 등으로 게시한 경우 (허위영상물 등의 배포 등)
-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 사진, 음란한 내용의 글 등을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다. 사례

수사기관으로부터 학생들의 휴대전화에서 100여 건이 넘는 불법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조사 결과, 학생들이 4개월 이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확인된 피해교원이 10명 이상이었다. 이 사건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자, 일부 보호자는 자녀가 촬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촬영물을 보기만 하거나 소지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그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이를 저장·소지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30)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력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 3182 판결 참조).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는 반포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 또한,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 Q. 가해자가 자신은 성욕을 만족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 A.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³¹⁾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가. 개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불법정보 유통 행위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 등)을 통하여 아래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등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원격수업 중 음란한 음향을 틀어 교원과 수업 참여 중인 학생들이 듣게 하는 경우
- 교원을 비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교원이 학생들을 차별하고,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자주 한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경우
-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3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다. 사례①

원아의 보호자는 “아이의 피부질환이 유치원의 지지분한 놀이환경 때문”이라며 유치원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거액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유치원은 주기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청소와 방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유치원 생활로 인해 피부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니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호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인터넷 카페에 유치원과 담임교사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며 “질병을 유발한 유치원과 담임교사가 사안을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행위에 해당한다.
- 위 사안에서 원아의 보호자는 인터넷 카페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다만,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린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데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여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원아의 보호자는 진단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거액의 치료비와 위자료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글을 올린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판례 헌법재판소 2020. 2. 27.자 2017헌마230 전원합의체 결정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참조).

Q.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단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댓글을 작성하는 형태라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형식에 상관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³²⁾

3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라. 사례②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교사에게 “당신 때문에 괴로워 매일 죽고 싶다”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를 한 달여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보냈다.

교사가 해당 문자에 답을 하지 않자, 보호자는 “죽어서도 당신을 잊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교사에게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 위 사안에서 교사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보호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 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4헌바434 전원합의체 결정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2008도4351 판결 참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Q. 어느 정도로 해야 불법정보 유통 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나, 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보면 17개월 동안 3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³³⁾, 하루 동안 3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³⁴⁾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7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에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³⁵⁾가 있습니다.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가. 개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침해유형으로 규정된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범죄 행위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 중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33)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참조

34) 대구지법 2007. 4. 17. 선고 2007노146 판결 참조

35)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참조

- 예를 들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형법상 강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범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 행위, 퇴거불응죄 등과 같이 위반 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학생이 담임교사의 거주 주소를 알아낸 뒤, 불안감을 느끼도록 쫓아다니는 경우
-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들과의 대화를 녹음 하는 경우

다. 사례

한 초등학교 보호자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 이후 보호자는 교사에게 연락해 “이게 무슨 상황이나”, “아이에게 왜 이런 말을 했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교사는 보호자에게 “동의 없이 수업 중 음성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지만, 보호자는 “녹음하면 안 되는 근거가 뭐냐”며 녹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보호자의 계속된 녹음과 반복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정상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 교원의 음성을 교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교원의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³⁶⁾이자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며, 보호자는 발언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이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참고 대법원 2024.1.11. 2020도1538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 및 제4조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

36) 음성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또한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0.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가. 개념

- 학교 운영에 대한 단순한 정보 요구나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에 대한 보호자의 정당한 의견 제시³⁷⁾를 넘어서, 교원을 괴롭히기 위함이나 특혜 요구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교사나 학교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보호자가 담임교사에 불만을 품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해당 교사의 수업 내용, 교원단체 가입 여부, 출장 및 의무 연수 이수 내역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교사의 모든 지도·훈육 행위를 금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다. 사례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를 본 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염려해 뒤따라 나갔으나, 교사를 피해 도망가던 학생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의 보호자는 “지금껏 아이를 자유롭게 키워왔다. 우리 아이는 지도하면 더 옳아가니 앞으로는 선생님이 어떠한 지도도 하지 말라”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교원에게 학생 지도 및 교육 행위를 금지하라는 보호자의 민원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이러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7) 「교육기본법」 제13조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1.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가. 개념

- 교사의 직무 범위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 등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보호자가 아이의 취향에 맞는 급식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의한 경우
- 보호자가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학생의 모든 일을 교사가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학교에서의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배상책임이 없음에도 교원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다. 사례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 팔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담임교사는 즉시 학생을 보건실로 데려가 보건교사의 치료를 받게 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였다. 보호자는 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받게 하였다.

그런데 이후 보호자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공제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에게 별도의 배상비를 요구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비,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그리고 학생을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위 사안에서 담임교사는 보건교사에게 인계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였고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등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이 배상책임을 진다.
- 따라서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안에서 교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가. 개념

-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³⁸⁾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³⁹⁾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신체적 유형 : 교원의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⁴⁰⁾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교원의 몸에 스치거나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언어적 유형 : 음란한 농담,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 신체 접촉 강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 (교원에게 자기야, 누나/오빠 사귀자, 섹시한데, (성적인 신체 부위가) 커요/작아요 등의 말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시각적 유형 : 시각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림이나 문자를 형상화하거나 보이는 경우 (교원이 볼 수 있도록 교원의 동선에 음란한 사진을 두는 행위)

다. 사례

중학교 학생이 수업 중 교실에서 “선생님, 야한 거 보여드릴게요.”라고 말한 후 입고 있던 셔츠의 단추를 가슴까지 풀어 교사에게 보였다.

- 피해교원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학생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이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므로 본 유형의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8)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3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40) (비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행위(강제추행)이므로(각주 14. 참조)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제2호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한다.

1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가. 개념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란, 적법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적 판단과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여 교육활동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학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재량권 그리고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담임교사를 교체해야 할 만한 사정이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 보호자가 “지각 처리하지 말라”,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을 이렇게 해달라”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
- ‘지필교사 시험범위를 줄여라, 시험문제를 쉽게 내라’ 등 평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다. 사례

수업 중 다른 학생을 괴롭히며 교육활동을 방해한 초등학생에 대해 담임교사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실 뒤쪽 자리로 이동하여 수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교사의 이러한 지도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 담임교사는 정당한 인사발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비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례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학기 중에 담임교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학교장에게는 학기 중에 담임 보직인사를 다시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해당 학급의 학생들에게는 담임 교사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가. 개념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하여 학생이 단순하게 불응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교원의 교육·지도 범위에 속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 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반면,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이 방해되는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란 그 방해 결과를 의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의 결과에 무관심하거나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의도성 판단은 침해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생의 나이, 방해 행위의 구체적 모습, 반복 여부, 지속성,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교사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방해할 의도로 수업 중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눕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수업 중 옆자리 학생과 떠들며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가 지도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교사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하며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다. 사례 ①

학생 A는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을 돌아다니며, 제자리에 앉으라는 교사의 지도를 무시했다. 학생 B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으며, 교사가 수업 참여를 독려하면 일부러 드러눕고 노래를 부르며 방해 행동을 했다. 교사의 반복된 지도에도 A와 B의 문제 행동이 지속되어 수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

-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자체는 교원의 교육적 지도 대상이고, 이에 대한 조치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이뤄지지만,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위 사안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여러 차례 지도하였음에도 학생들의 의도적인 수업 방해가 계속되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라. 사례 ②

수업 중 한 학생이 과자를 먹자, 교사가 “수업 중에 과자를 먹지 말라”고 지도했다. 학생은 곧바로 지도에 따라 과자를 가방에 넣고 먹기를 멈췄으나, 얼마 후 다시 교사의 눈을 피해 소리를 내지 않고 과자를 녹여 먹기 시작했다.

- 위 사례에서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우선 교사의 지도에 따랐고 이후에도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으려 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학생이 교육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의 ‘의도적 방해’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단순 생활지도 불응이나 수업 방해에 가깝다.
- 따라서 해당 학생의 행위는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지도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1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가. 개념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일정 발언만을 녹음한 후 단체채팅방에 올린 경우
- 수업하는 교사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다른 사진과 합성한 뒤 SNS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영상 촬영물을 게임 개인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경우

다. 사례

학생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뒤, 이를 SNS에 무단으로 게시하고 배포하였다.

- 위 사례에서 녹음된 내용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배포하였으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이 경우 학생은 교사 발언의 상대방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녹음하더라도 범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교원의 음성권에 대한 침해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녹음 파일을 배포한 행위는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가. 개념

-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⁴¹⁾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교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교원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방해·간섭·제한 행위를 포괄한다.
- 학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과 고시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준하는 정도인지 신중히 판단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또한, 학교장의 판단만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보호자 등이 교원에게 1:1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욕설, 폭언 등을 하였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등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41)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VI

부 록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안심의 회의 시나리오(예시)[분쟁조정 단계 제외]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회의 시나리오(예시)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안)
4. 각종 서식
5.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안심의 회의 시나리오(예시)[분쟁조정 단계 제외]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시작전	회의 자료 준비 및 출석위원 확인
개회 선언	<p>(간 사) 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간사 ○○○입니다. 지금부터 ○○○○학년도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p> <p>(위원장) 간사께서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p> <p>(간 사) 재적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p> <p>(위원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명 중 과반수인 ○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p>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의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목적과 규정에 따라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번호 20○○-○○, A교사와 B학생이 관련된 사안입니다.
제척·회피 안내	<p>(위원장) 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들) 없습니다.</p>
주의 사항 안내	(위원장)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중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 진행과정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녹취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 조사 보고	<p>(위원장) 이번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p> <p>(간 사)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월 ○일 ○○학교 ○○에서 발생하였습니다. B학생이 수업 중이던 A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둘러 A교사의 허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월 ○일 해당 교원 및 목격자인 C학생의 진술이 이루어졌고, ○월 ○일 B학생의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증거로 A교사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되었습니다.</p> <p>(※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p> <p>(※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관련 보고 및 추인 절차 진행)</p>
<p>※ 당사자 사이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p> <p>(간사) A교사와 B학생은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한 점에서 주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A교사는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B학생은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관련 증거로 ~이 제출되었습니다.</p> <p>(간 사) 양측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 의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p>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쟁점 사항 확인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원치 않으므로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 사안은 당사자의 주장 중 상반된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에 대한 파악으로 요약됩니다.
질의 응답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간사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 신청 시, 이후 시나리오는 117쪽 참고)
피해 교원 진술	(위원장) 다음으로 피해교원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해당 교원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던 피해교원 입장〉
	(위원장) 본 사안으로 선생님께서 많이 놀라시고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교원) 저는 ○○○입니다.
	(위원장) 먼저, 기피신청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와 관련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피신청할 위원이 있습니까? (※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위원장) 다음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사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생님께서는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안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질문 또는 필요한 발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침해행위 사실 확인(특히, 학생 및 보호자의 주장과 다른 경우) -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회복 정도) - 부가적 판단요소(임신, 장애 여부) - 그 밖에 선도·교육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 동의) 선생님께서 이 사안과 관련한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교원) (※ 관련 학생에 대한 의견 및 보호조치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진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p>(위원장) 네. 성실히 응답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피해교원 퇴장〉</p>
<p>관련자 진술</p>	<p>(위원장) 다음으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측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입장시켜 주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대기 장소에 있는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입장〉</p> <p>(위원장)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p> <p>(학 생) 저는 ○○○입니다.</p> <p>(보호자) 저는 ○○○ 학생의 아버지/어머니 ○○○입니다.</p> <p>(위원장) (기피신청 안내, 주의사항 안내)</p> <p>(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p> <p>(간 사) (사안설명) 이상입니다.</p> <p>(위원장) ○○○ 학생과 보호자는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p> <p>(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p>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p>※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행위 사실 확인(특히, 피해교원과 주장이 다른 경우) -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회복 정도) - 부가적 판단요소(장애 여부) - 그 밖에 선도·교육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div> <p>(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p>(보호자) (마지막 진술)</p> <p>(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 학생과 보호자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결정은 서면으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 학생 및 보호자 퇴장〉</p>
<p>교육 활동 침해 행위 사실 심의</p>	<p>(위원장) 지금까지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p> <p>(위원장) 먼저, 양측의 다툼없는 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상호간 논의)</p> <p>다음은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사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논의한 양측의 다툼 없는 사실, 기제출한 증거자료 및 오늘 청취한 진술자료 및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들 상호간 논의)</p>

절차	세부 진행 발언
	<p>(위원장) 양측의 다툼 없는 사실 및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사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인정되는 사실을(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p> <p>(위원장) 이어서 인정되는 사실 관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p> <p>(위원장) 해당 사안은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교원지위법」 제19조 ○○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p>
관련 학생 조치 심의	<p>■ 기본 판단 요소 심의</p> <p>(위원장) 다음으로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간사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자료 제공)</p> <p>(위원장) 먼저 기본 판단요소 중 '침해행위 심각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각성' 정도에 대한 점수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심각성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점수 의결〉</p> <p>(위원장) 침해행위 심각성은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 판단 요소 심의〉</p> <p>(위원장) 다음으로 '침해행위 지속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해행위 고의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해 학생 반성 정도 및 선도가능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회복 정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p> <p>(위원장) 그럼 기본 판단요소에 대한 심의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심각성 3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침해 학생 반성 정도 1점,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 1점, 총 11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에 따르면 제4호 출석정지에 해당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p> <p>■ 추가 판단 요소 심의</p> <p>(위원장) 다음으로 추가 판단 요소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이 가능하며,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이 가능합니다.</p> <p>(※ 간사는 추가 판단 요소와 관련된 사실 보고)</p> <p>(※ 가중·감경 사유 검토 및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감경·가중 여부 의결)</p> <p>(위원장) 본 사안의 경우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그대로 출석정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p> <p>(위원들) 없습니다.</p> <p>(위원장) 출석정지로 의결한 경우 출석정지 일수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출석정지 일수에 관하여 위원 상호 의견 개진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정지 일수 의결〉</p>

절차	세부 진행 발언
	<p>(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출석정지 일수는 5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p> <p>(위원들) 없습니다.</p> <p>(위원장)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일수는 5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p>
<p>관련 학생 부가 조치 여부 심의</p>	<p>(위원장) 다음으로 부가조치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학생 선도를 위해 부가적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부가조치 여부 및 시간 의결〉</p> <p>※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가조치 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시간도 함께 의결하며, 보호자의 특별교육 참여시간도 의결함</p> <p>※ 출석정지(4호), 학급교체(5호), 전학(6호) 조치 시 반드시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시간도 함께 의결해야 함</p> <p>※ 전학조치의 경우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p> <p>(위원장)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시간,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시간을 부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p>
<p>관련 학생 조치 최종 의결</p>	<p>(위원장) 위원님들의 심의의결 내용을 종합한 결과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시간으로, 보호자에 대하여는 특별교육 ○시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p> <p>(위원들) 없습니다.</p> <p>(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에 대하여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시간으로, 보호자에 대해 특별교육 ○시간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p>
<p>피해 교원 보호 조치 권고</p>	<p>(위원장) 지금부터 피해교원에게 추가로 필요한 보호조치에 관한 권고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간사는 해당 학교장이 기 실시한 보호조치와 추가 가능한 보호조치 유형 설명)</p> <p>(위원1) 피해교원 ○○○은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을 지원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p> <p>〈위원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추가 보호조치 권고안 의결〉</p> <p>(위원장) 위원님들 간 논의에 따라 피해교원 ○○○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로 심리 상담 지원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p> <p>(위원들) 없습니다.</p> <p>(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피해교원 ○○○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는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보호조치 내용 낭독 : 피해교원 ○○○에 대해 추가로 심리 상담 지원을 권고한다.) (의사봉)</p>
<p>폐회 선언</p>	<p>(위원장)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 중 알게 된 당사자의 사생활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년도 제 ○차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p>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회의 시나리오(예시)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시작 전	회의 자료 준비 및 출석위원 확인
개회 선언	<p>(간 사) 반갑습니다.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간사 ○○○입니다. 지금부터 ○○ ○○학년도 제○차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p> <p>(위원장) 간사께서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p> <p>(간 사) 재적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p> <p>(위원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명 중 과반수인 ○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지원청 제○ 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p>
위원장 인사말	<p>(위원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목적과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p>
안건 상정	<p>(위원장) 오늘 조정할 안건은 사안번호 20○○-○○, A교사와 B학부모가 관련된 사안입니다.</p>
제척·회피 안내	<p>(위원장) 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6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위원들) 없습니다.</p>
사안 조사 보고	<p>(위원장) 이번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겠습니다.</p> <p>(간 사)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월 ○일 ○○학교 ○○에서 발생하였습니다. C학생의 아버지/어머니인 B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A교사에게 “○○○○”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둘러 A교사의 허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월 ○일 해당 교원 및 목격자인 D학생과 E교사의 진술이 이루어졌고, ○월 ○일 B학생의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증거로 A교사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p>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margin: 5px 0;"> <p>※ 당사자 사이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간사) A교사와 B학생은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한 점에서 주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A교사는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B학생은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관련 증거로 ~이 제출되었습니다.</p> </div> <p>(간 사) A교사가 ○월 ○일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B학부모도 분쟁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p>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질의 응답	<p>(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분쟁 조정	<p>(위원장) 양측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양측 당사자를 입장시켜 주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대기 장소에 있던 양측 당사자 입장〉</p> <p style="text-align: center;">(※ 해당 시나리오는 피해교원A와 침해 관련 학부모B를 예시로 기재)</p> <p>(위원장)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p> <p>(교원A) 저는 ○○○입니다.</p> <p>(위원장)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p> <p>(학부모B) 저는 ○○○입니다.</p> <p>(위원장) 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통해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입니다. 양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절차를 원하신 만큼 마음을 열고 미래지향적 조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p> <p>먼저, 기피신청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와 관련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측당사자 중 기피신청 할 위원이 있습니까?</p> <p>(교원A, 학부모B) 없습니다.</p> <p>(※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p> <p>(위원장) 이번 분쟁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및 요청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께서 의견 및 요청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p> <p>(교원A)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가 크고, 재발이 우려됩니다. 보호자께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p> <p>(학부모B) 이번 일에는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잘못된 상담방식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방식을 개선해 주시고, 이번 일로 학생이 앞으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p>
분쟁 조정 성립	<p>(위원장) 과거의 문제보다는 관계회복 및 장래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씩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호수용을 전제로 학부모님께서도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원을 지급하고, 선생님께서는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양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p> <p style="text-align: center;">〈양측 당사자 동의〉</p> <p>(위원장) 이로써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조정 합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분쟁조정 합의서 작성 및 서명·날인〉</p>

절차	세부 진행 발언
	<p>(위원장) 양 당사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당사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양측 당사자 퇴장〉</p> <p>(위원장)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 중 알게 된 당사자의 사생활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년도 제 ○차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p>
분쟁 조정 불성립	<p>(위원장) 과거의 문제보다는 관계회복 및 장래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씩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호수용을 전제로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원을 지급하고, 선생님께서는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양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p> <p style="text-align: center;">〈양측 당사자 부동의〉</p> <p>(위원장)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양 당사자가 다시 조정을 원할 경우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심의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조정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① 〈양측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재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p> <p>(위원장) (당일 심의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경우) 분쟁조정 불성립으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다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추후 심의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경우)</p> <p>금일 분쟁조정 불성립으로 인하여 추후 심의를 위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추후 재개 최하겠습니다. 심의 일정은 개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양 당사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② 〈양측 당사자 모두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p> <p>(위원장) 양 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서[서식22]를 작성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재조정 일정에 관한 안내는 추후 ○○시·도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양측 당사자 퇴장〉</p> <p>(위원장)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 중 알게 된 당사자의 사생활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년도 제 ○차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p>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안)42)

○○교육지원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교육지원청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제3조 (위원장)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원지위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2) 본 규정은 예시로서, 관련 법령과 교육부 지침,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규정을 제정 필요

1.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사유가 발생 시 21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학사일정, 사안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피해교원,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기 가능)
-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에게 출석 통지를 해야 한다.

제6조 (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의 소위원회를 둔다.

- ②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③ 각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한다.
- ④ 각 소위원회의 재적인원은 소위원회별로 다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다.
- ⑦ 교육장은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소위원회별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간사는 소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척 등 사유가 있는 위원은 개의 정적수에 포함)

-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장은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녹화·촬영이 가능한 기기 등을 소지한 사람의 입실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발언의 요지, 결정사항, 표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⑤ 피해교원의 전보, 침해 관련 학생의 전학 등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등 복수의 교육(지원)청에 걸쳐 있는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양측 당사자의 편의 및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해당 교육(지원)청 간 협의에 의해 공동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학교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는 기한 내에 위원회를 개최한 후, 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조치 사항을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결정한다.

② 교육장은 조치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결과 통보서를 각 당사자 및 피해교원에게 송부하고, 해당 학교에 결과통지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분쟁조정) ①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의 분쟁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확인 후 서명날인하고, 합의서를 그 자리에서 즉시 교부한다.

④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심의로 전환하거나, 재조정 희망 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12조 (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사항의 위임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을 의결해야 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와 동일하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과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를 준용한다.
- ⑥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학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람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기타) 본 규정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내부결재가 있을 때(2026. 3.)로부터 시행한다.

4. 각종 서식

학교

- 〈서식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 〈서식 1-1〉 (별지) 사안 신고서
- 〈서식 2〉 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 〈서식 3〉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 〈서식 4〉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
- 〈서식 5〉 참고인 진술서
- 〈서식 6〉 분쟁조정 신청서
- 〈서식 7〉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 〈서식 8〉 사안 종결 확인서
- 〈서식 9〉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제출 공문
- 〈서식 10〉 교육활동 침해 사안 종결 확인서 제출 공문
- 〈서식 1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현황 보고 공문
- 〈서식 12-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보고서(학생용)
- 〈서식 12-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보고서(보호자 등용)

교육지원청

- 〈서식 13〉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대사안 보고
- 〈서식 14〉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 〈서식 15〉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
- 〈서식 15-1〉 (별지) 서면 의견서
- 〈서식 16〉 제○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예시)
- 〈서식 16-1〉 공동 운영 회의록(피해교원 소속 교육지원청)
- 〈서식 16-2〉 공동 운영 회의록(침해 관련자 소속 교육지원청)
- 〈서식 17〉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결서
- 〈서식 18-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서(학생용)
- 〈서식 18-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서(보호자 등용)
- 〈서식 18-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서(교원용)
- 〈서식 19〉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
- 〈서식 20〉 분쟁조정 합의서
- 〈서식 2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협의록
- 〈서식 22〉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 〈서식 2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고 및 사안 처리 대장
- 〈서식 2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서 및 비밀서약서
- 〈서식 25〉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장
- 〈서식 26〉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재통지서 공문
- 〈서식 27-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재통지서(학생용)
- 〈서식 27-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재통지서(보호자 등용)

[서식 1] 피해교원 → 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피해교원	소속			<input type="checkbox"/> 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연락처			이메일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정규교원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원 <input type="checkbox"/> 침해 관련자의 담임 여부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사 여부								
침해 관련자	소속			학년/반						
	성명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락처			이메일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보호자	성명	※ 침해 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기재			연락처					
사안 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필요 시 [별지] 사용 가능									
피해교원 요청사항	즉시분리: [] 희망 [] 희망하지 않음 ※ [서식3]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첨부									
목격자(참고인)유무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성명 : 관계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분쟁조정 신청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위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합니다. <div style="float: right; 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div>										
입증자료 첨부	※ 필요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기재 및 제출									
처리 절차										
신고	→	접수 및 사안발생 보고	→	사안조사	→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심의	→	처분 통보	→	조치이행 협조
피해교원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지원청



[서식 1-1] 별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별지)

접수번호	접수일
※ 사안 내용 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활용	

[서식 2] 학교 → 교육지원청

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침해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사안 개요	※ 사안의 개요를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간략히 기재	
사안 유형	<input type="checkbox"/>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input type="checkbox"/>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긴급조치 일자	2026년 00월 00일	
긴급조치 내용	<input type="checkbox"/> 제1호(학교에서의 봉사) <input type="checkbox"/> 제3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input type="checkbox"/> 제4호(출석정지)[출석정지 기간: 일] <input type="checkbox"/> 제5호(학급교체) ※ 상기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긴급조치 시행 필요성	※ 긴급조치 시행이 필요했던 사유를 간략히 기재	
긴급조치 전·후 절차	조치 전	※ 학교의 장은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의견진술 기회 제공(제공일자: / 제공방법:) <input type="checkbox"/>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려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음
	조치 후	※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한 때,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통지 완료(통지일자: / 통지방법:) <input type="checkbox"/> 통지 불가(사유:)
작성일		작성자 (서명)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학교장) (서명 또는 인)

[서식 4] 침해 관련자 → 학교 → 교육지원청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

침해 관련자	성명		소속/학년/반	
	연락처		피해교원과의 관계	
	주소			
사안 또는 절차에 대한 의견	※ 사안 발생 경위에 대한 본인의 입장 및 의견 작성(필요시 별지 사용) (예: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사과 또는 유감의 뜻, 절차에 대한 요청 사항 등)			
목격자(참고인)유무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성명 : 관계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입증자료 첨부	※ 필요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기재 및 제출			
분쟁조정 신청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보호자 성명	※ 침해 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기재		연락처	
작성일			작성자	(서명)



[서식 5] 참고인 → 학교 → 교육지원청

참고인 진술서

참고인	성명			소속/학년/반
	연락처			피해교원 또는 침해 관련자 와의 관계
사안 또는 절차에 대해 목격한 사실		※ 객관적으로 확인 및 직접 목격 사실만 구체적으로 작성 (예: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시간·장소·행동 중심으로 작성)		
입증자료 첨부		※ 필요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기재 및 제출		
작성일				작성자 (서명)

[서식 7] 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작성자	소속/직위/성명	
피해교원	소속				<input type="checkbox"/> 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연락처				교육경력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정규교원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원 <input type="checkbox"/> 침해 관련자의 담임 여부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사 여부					
침해 관련자	소속				학년/반		
	성명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소						
	연락처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보호자	성명	※ 침해 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기재			연락처		
사안 내용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경
	장 소	(예) ○○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					
	사안 개요	(별지 사용 가능)					
	최초 발생 여부	<input type="checkbox"/> 최초 발생 사안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이력 有* *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보위 처분을 받은 경우 • (일시) / (조치사항) ※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경우,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쟁점사안	피해교원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 3. 1. 10:00 경 1학년 1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 A학생이 책상 밑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를 제지하려 하자 학생이 “아 XX”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교사의 어깨를 밀쳤음. 피해교원 문답서, 진단서 제출됨. 					
	침해 관련자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B교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야단을 치자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교사를 밀친 것이고 욕설은 하지 않았음. 관련 학생 문답서 제출됨. 					
	침해 관련자 보호자의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교사에게 미안한 마음임.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겠음. 학부모 문답서 제출됨. 					

[서식 8] 양측 당사자 작성

사안 종결 확인서

성 명	
소속학교 /직급	
주 소	※ 피해교원의 경우, 학교 주소로 기재 가능
연락처	
사안 종결 희망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1] 2020. 00. 00. 00:00 경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하였으나 학생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소통으로 교육적 해결을 원하는 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음 • [예시2] 2020. 00. 00. 00:00 경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하였으나 학생생활 교육위원회를 통한 학생 지도를 원하는 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음
기타 의견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추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사안의 종결을 희망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0000학교장 귀하

[서식 9] 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제출 공문

○○○○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제출

1. 관련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

나. ○○○○학교-○○○○ (20○○. 00. 00) (*관련 내부 공문)

2.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피해교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성명	비고
피해교원	○○○○학교	○○○	3-1 담임

나.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성명	비고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교	○○○	3-1 학생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참고 사항

: 학사 일정(평가, 체험학습) 등 개최일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기재
 침해 관련자 기존 조치 등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기재 등

-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서식7] 1부.
 2.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서식1] 1부.
 3.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의견서[서식4] 1부.
 4. 참고인 진술서[서식5] ○부.
 5. 기타 심의의결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끝.

[서식 10] 학교 → 교육지원청: 사안 종결 확인서 제출 공문

○○○○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교육활동 침해 사안 종결 확인서 제출

1. 관련: 사안 발생보고서 제출 공문 대호
2. 20○○.○○.○○. 신고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가. 피해교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성명	비고
피해교원	○○○○학교	○○○	3-1 담임

- 나.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성명	비고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학교	○○○	3-1 학생

- 다. 취소사유: 오인 신고 / 피해교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미희망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예정 등

붙임 사안 종결 확인서[서식8] 각 1부. 끝.

[서식 11] 학교 → 교육지원청: 조치 미이행 현황 보고 공문

○○○○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현황 보고

1. 관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6조, 제35조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 미이행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구분	소속	이름	조치 결정사항	미이행 사유
학생	○○○○학교 ○학년 ○반	○○○	교내봉사 8시간 특별교육 4시간	단순거부, 연락두절 등
보호자	○○○○학교	○○○	특별교육 2시간	단순거부, 연락두절 등

붙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보고서[서식 12] 1부. 끝.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보고서
(학생용)

1. 대상 학생: ○○학교 ○학년 ○반 성명 ○○○
2. 심의 개최일: 20○○년 ○○월 ○○일
3. 조치 결정 통지일: 20○○년 ○○월 ○○일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4항)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5. 미이행 조치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4항)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상기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미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조치 가중 및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보고서
(보호자 등)

1. 대상자 성명: ○○○
2. 심의 개최일: 20○○년 ○○월 ○○일
3. 조치 결정 통지일: 20○○년 ○○월 ○○일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보호자 등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2호)
-------	------------------------------

5. 미이행 조치사항

보호자 등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2호)
-------	------------------------------

상기 보호자 등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미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대사안 보고

〈2000. 00. 00.(0)〉

보고 개요

주요내용(요약)

❖

○ 교원지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사항)

구분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항
	1. 「형법」 제2편제25장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추행, 간음,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사안 내용 ※ 보고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명:

- ▶ (발생 일시/장소)
- ▶ (침해 내용)
- ▶ (진행 상황)
- ▶ (피해교원 조치)
- ▶ (침해학생 조치)
-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개최 결과 :
- ▶ (기타 특이사항)

향후 조치 계획

-
-

[서식 14]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작성자	소속/직위/성명	
피해교원	소속				<input type="checkbox"/> 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연락처				교육경력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정규교원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원 <input type="checkbox"/> 침해 관련자의 담임 여부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사 여부					
침해 관련자	소속				학년/반		
	성명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소						
	연락처						
	기본정보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보호자	성명	※ 침해 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기재			연락처		
사안 내용	일시	년	월	일	시	분	경
	장소	(예) ○○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					
	사안 개요	(별지 사용 가능)					
	최초 발생 여부	<input type="checkbox"/> 최초 발생 사안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이력 有* *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보위 처분을 받은 경우 • (일시) / (조치사항) ※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경우,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쟁점사안	피해교원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3. 1. 10:00 경 1학년 1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 A학생이 책상 밑으로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를 제지하려 하자 학생이 “아 XX”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교사의 어깨를 밀쳤음. • 피해교원 문답서, 진단서 제출됨. 				
침해 관련자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B교사가 휴대 전화를 사용했다고 야단을 치자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교사를 밀친 것이고 욕설은 하지 않았음. • 관련 학생 문답서 제출됨. 					
침해 관련자 보호자의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교사에게 미안한 마음임.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겠음. • 학부모 문답서 제출됨. 					

쟁점사안	목격자 (참고인) 주장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격자 □ 무 □ 유 (성명 : 관계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 목격자 진술 내용 -
입증자료 첨부	※ 필요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기재 및 제출	
교육 활동 침해 유형	<input type="checkbox"/> 공무·업무방해 <input type="checkbox"/> 무고 <input type="checkbox"/> 상해·폭행 <input type="checkbox"/> 협박 <input type="checkbox"/> 명예훼손·모욕 <input type="checkbox"/> 손괴 <input type="checkbox"/> 성폭력범죄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 유통행위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input type="checkbox"/>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 <input type="checkbox"/> 성적 언동 등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input type="checkbox"/> 영상·화상·음성 등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배포 <input type="checkbox"/> 학교장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 위반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 관련 증거에 따라 조사내용을 육하원칙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은 당시 휴대전화 사용사실 및 욕설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당시 옆자리에 있던 ◇◇ 학생이 당시 A학생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 ◇◇, □□, △△ 학생이 당시 A학생이 B교사에게 “씨〇”이라고 욕을 하였고 양손으로 교사의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하였음 • A학생은 당시 휴대전화 사용사실 및 욕설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B교사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교원의 진술과 목격 학생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함 • 따라서 2024. 3. 11. 10:00 경 1학년 1반 교실에서 A학생이 B교사의 어깨를 밀치고 “씨〇”이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임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사실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 고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교원의 부상 정도는 가벼운 타박상(전치 2주)으로 경미함 • 해당 학생의 경우 이전에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주의를 준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음 • 해당 학생의 경우 과거 교사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음
피신청인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 사용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피해교원에게 반감을 갖고 있으며 사과할 의사가 없음
관계회복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가 피해교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였음 • 학생이 반성을 하지 않고 사과할 의사가 없어 피해교원은 학생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피해교원의 임신·장애 여부 및 그 정도		
침해 관련자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피해교원 보호조치	(피해교원에게 실시한 보호조치 내용 기재) (예) 특별휴가 0일, 공무상병가 0일, 심리 상담 지원	
기타사항	<input type="checkbox"/> 형사고소 (피해교원이 학생 고소 또는 보호자가 피해교원 아동학대 신고 등) <input type="checkbox"/> 민사소송 (피해교원이 보호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등) <input type="checkbox"/> 기 타	

[서식 15] 교육지원청 → 양측 당사자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			
피해교원	소속	성명	직위
침해 관련자	소속	성명	구분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안내			
일 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장 소			
안 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정 절차 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사안의 요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 위 내용으로 신고·접수된 사안으로 위 사안 개요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면 ○○교육지원청(전화 : 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안내서, 신분증, 필요 시 추가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 의견서(별지)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 00월 00일 전까지 화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서식 16]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예시)

* 사안번호:○○교육지원청 2026-○○

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장소					
위원 정수:	명	참석 위원:	명	불참 위원:	명
신청인(피해교원)	○○○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피신청인(학생, 보호자 등)	○○○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피신청인의 보호자	○○○(학생과의 관계)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 회 순
 - 1) 개회
 - 2) 당사자 참석 여부 확인 및 성원 보고
 - 3)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 4) 교권보호위원회 개요 안내-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 5) 사안보고
 - 6) 관련 당사자 진술(피해교원 확인 및 질의응답→침해학생 또는 침해 학부모 확인 및 질의응답)
 - 7) 사안 협의 및 조치 결정
 - 8) 폐회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참석위원 명단]
 - [개회 및 인사]
 - 간사 :
 -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전달]
 - 위원장 :
 - [간사의 사안 요지 설명]
 - [당사자(피해교원) 의견 청취 및 문답]
 - 위원장: (신분 확인)/ 기피 신청 여부 확인
 - [당사자(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의견/또는 침해 보호자 청취 및 문답)]
 - 위원장: (신분 확인)/ 기피 신청 여부 확인
 -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청취]



* 각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간사는 위원들에게 각 당사자에게 사안의 요지 및 위원의 회의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사실과 당사자가 불출석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을 설명하고 서면 진술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사안 협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심의

위원장: 제출된 자료와 분쟁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본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침해 학생 또는 침해보호자 조치 사항 심의]

1. 기본 판단 요소- 심의 각 판단 요소에 대한 합의 점수 도출/ 합의가 안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각 위원 점수의 합산 후 평균 점수 내지 않음.

2. 추가 판단 요소 심의-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 내용의 가중, 감경 의결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사항 논의]

[침해 학생 조치 또는 침해보호자에 대한 불복 절차 안내]

[폐회]

위원장: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년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	교육활동 침해 아님

[조치 결정 및 의결 내용]

· 침해학생 또는 침해보호자 조치

연번	성명 (학년/반)	교육활동 침해유형	조치결정 (관계법령)	표결내용
1	○○○			만장일치
2				찬성(7), 반대(2)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내용]

피해교원	권고 사항	표결내용
○○○		

[서식 16-1] 공동 운영 회의록(피해교원 소속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운영 회의록(예시)

* 사안번호:○○교육지원청 2026-○○

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장소						
○○교육지원청	위원 정수: 명	참석 위원: 명	불참 위원: 명			
	신청인(피해교원)	○○○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교육지원청	위원 정수: 명	참석 위원: 명	불참 위원: 명			
	피신청인(학생, 보호자 등)	○○○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피신청인의 보호자	○○○(학생과의 관계)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 회순
 - 1) 개회
 - 2) 당사자 참석 여부 확인 및 성원 보고
 - 3)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 4) 교권보호위원회 개요 안내-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 5) 사안보고
 - 6) 관련 당사자 진술(피해교원 확인 및 질의응답→침해학생 또는 침해 학부모 확인 및 질의응답)
 - 7) 사안 협의 및 조치 결정
 - 8) 폐회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참석위원 명단]
 [개회 및 인사]
 간사 : 본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이 공동 운영합니다. 피해교원이 ○○교육지원청 소속이므로 ○○교육지원청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피해교원 및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진술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까지 함께 하고 이후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부터는 각 교육지원청별 따로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전달]
 [간사의 사안 요지 설명]
 [당사자(피해교원) 의견 청취 및 문답]
 위원장: (신분 확인)/ 기피 신청 여부 확인
 [당사자(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의견/또는 침해 보호자 청취 및 문답]
 위원장: (신분 확인)/ 기피 신청 여부 확인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청취]



* 각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간사는 위원들에게 각 당사자에게 사안의 요지 및 위원의 회의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사실과 당사자가 불출석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을 설명하고 서면 진술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공동 운영 종료]

간사 : *이것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의 공동 운영을 마칩니다. 이후부터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별도의 장소에서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심의위원께서는 장소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회부터 공동의견 청취단계까지의 회의록 내용은 주관교육청에서 작성 후 공유 협조 필요

[사안 협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심의

위원장: 제출된 자료와 분쟁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본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사항 논의]

* 교육활동 침해로 의결된 경우 보호조치 논의, 침해 아님인 경우 회의 종료

[폐회]

위원장: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년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	교육활동 침해 아님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내용]

피해교원	권고 사항	표결내용
○○○		

[서식 16-2] 공동 운영 회의록(침해 관련자 소속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운영 회의록(예시)

* 사안번호:○○교육지원청 2026-○○

일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장소					
○○교육지원청	위원 정수: 명	참석 위원: 명	불참 위원: 명		
	신청인(피해교원)	○○○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교육지원청	위원 정수: 명	참석 위원: 명	불참 위원: 명		
	피신청인(학생, 보호자 등)	○○○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피신청인의 보호자	○○○(학생과의 관계)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 회 순
- 1) 개회
- 2) 당사자 참석 여부 확인 및 성원 보고
- 3)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 4) 교권보호위원회 개요 안내-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 5) 사안보고
- 6) 관련 당사자 진술(피해교원 확인 및 질의응답→침해학생 또는 침해 학부모 확인 및 질의응답)
- 7) 사안 협의 및 조치 결정
- 8) 폐회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참석위원 명단]

[개회 및 인사]

간사 : 본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이 공동 운영합니다. 피해교원이 ○○교육지원청 소속이므로 ○○교육지원청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피해교원 및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진술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까지 함께 하고 이후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부터는 각 교육지원청별 따로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전달]

[간사의 사안 요지 설명]

[당사자(피해교원) 의견 청취 및 문답]

위원장: (신분 확인)/ 기피 신청 여부 확인

[당사자(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의견/또는 침해 보호자 청취 및 문답]

위원장: (신분 확인)/ 기피 신청 여부 확인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청취]

*** 각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간사는 위원들에게 각 당사자에게 사안의 요지 및 위원의 회의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한 사실과 당사자가 불출석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을 설명하고 서면 진술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공동 운영 종료]

간사 : *이것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의 공동 운영을 마칩니다. 이후부터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별도의 장소에서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심의위원께서는 장소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회부터 공동의견 청취단계까지의 회의록 내용은 주관교육청에서 작성 후 공유 협조 필요

[사안 협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심의

위원장: 제출된 자료와 분쟁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본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침해 학생 또는 침해보호자 조치 사항 심의]

* 교육활동 침해로 의결된 경우 조치 사항 심의, 침해 아님인 경우 회의 종료

1. 기본 판단 요소- 심의 각 판단 요소에 대한 합의 점수 도출/ 합의가 안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각 위원 점수의 합산 후 평균 점수 내지 않음

2. 추가 판단 요소 심의-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 내용의 가중, 감경 의결

[침해 학생 조치 또는 침해 보호자에 대한 불복 절차 안내]

[폐회]

위원장: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년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	교육활동 침해 아님

[조치 결정 및 의결 내용]

· 침해학생 또는 침해보호자 조치

연번	성명 (학년/반)	교육활동 침해유형	조치결정 (관계법령)	표결내용
1	○○○			만장일치
2				찬성(7), 반대(2)

[서식 17]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결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결서

피해교원	소속	성명	직위
침해 관련자	소속	성명	구분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 결과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아님	
조치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3호)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보호자 등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1호)	
	교원 (권고)	심리 상담 및 조언(「교원지위법」 제20조제1항제1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교원지위법」 제20조제1항제2호)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소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이 유

1. 피해교사는 00학교 0학년 0반 담임교사이고, 학생은 00학교 0학년 0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해교사의 진술서, 목격학생 진술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건보고서 및 학생·피해교사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2026. 3. 11. 2교시 수업시간에 0학년 0반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피해교사가 학생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학생은 이에 불응하며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미0년”, “씨0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교사의 가슴을 2회 친 사실이 인정된다.

2. 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19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3.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특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학생에게 ‘학급교체(5호) 및 특별교육 이수(3호) 5시간’을 부과하고, 같은 조 5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2시간 참여’를 부과하기로 의결한다.

[서식 18-1] 교육지원청 → 학생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서
(학생용)

소속 학교	학년 반	성명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 결과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아님
---------------------	--

조치사항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3호)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	--

조치결정의 이유	학생000이 2026. 3. 11. 0시 0분 경 0학년 0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이던 피해교사 000 이 과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0000”, “00 000”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친 사실이 인정되며, 학 생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함. (날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내용이 긴 경우 별지 첨부 가능)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의사항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지위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27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 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 대상자가 조치 이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법」 제25조제8항에 의거하여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보호자)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습니다.



[서식 18-2] 교육지원청 → 보호자 등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서
(보호자 등용)

소속	성명	비고(자녀 소속, 성명 등)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 결과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아님
---------------------	--

조치사항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1호)
------	------------------------------------

조치결정의
이유

보호자 00이 2026. 3. 5.부터 2026. 3. 31.까지 교사 00에게 지속적으로 보호자의 자녀 00가 “차가운 우유를 마시면 아이가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우유를 중탕해 따뜻하게 해서 배식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전화연락 및 문자 메시지를 요구하였다.
학부모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중인 교원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날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내용이 긴 경우 별지 첨부 가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인

유의사항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지위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식 18-3] 교육지원청 → 교원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통지서
(교원용)

소속	성명	직위

교육활동 침해 사실 심의 결과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input type="checkbox"/> 교육활동 침해 아님
---------------------	--

침해 관련자 조치 결과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3호)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보호자 등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1호)

피해교원 보호 권고 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교원지위법」 제20조제1항제1호)
------------------	-------------------------------

조치결정의 이유	학생 000이 2026. 3. 11. 0시 0분 경 0학년 0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이던 피해교사 000이 과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0000”, “00000”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친 사실이 인정되며, 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날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내용이 긴 경우 별지 첨부 가능)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인

유의사항

교육장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 19] 교육지원청 →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

피해 교원	소속			□ 공립 □ 사립 □ 기타	
	성명			□ 남 □ 여	
	연락처			교육경력	
	기본정보	□ 정규교원 □ 기간제교원 □ 침해 관련자의 담임 여부 □ 특수교사 여부			
침해관 련자	성명	□ 학생 □ 보호자 □ 기타			
사안 내용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경			
	장 소	(예) ○○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			
	구체적 행위 내용	(별지 사용 가능)			
교육 활동 침해 유형	<input type="checkbox"/> 공무·업무방해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input type="checkbox"/> 무고 <input type="checkbox"/>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 <input type="checkbox"/> 상해·폭행 <input type="checkbox"/>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 <input type="checkbox"/> 협박 <input type="checkbox"/> 성적 언동 등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명예훼손·모욕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 <input type="checkbox"/> 손괴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input type="checkbox"/> 성폭력범죄 <input type="checkbox"/> 영상·화상·음성 등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배포 <input type="checkbox"/> 불법정보 유통행위 <input type="checkbox"/> 학교장 판단「교육공무원법」제43조제1항 위반 행위				
지역교권보호 위원회 개최일시	년	월	일	위원수	재적 명 // 출석 명
분쟁조정결과	<input type="checkbox"/> 개시 거부/중지		<input type="checkbox"/> 분쟁조정 거부 <input type="checkbox"/> 고소·소송제기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조정 성립				
	<input type="checkbox"/> 조정불성립				
조치 사항	구분	성명	직위	조치 결정 사항	
	피해 교원				
	침해 관련자				
	기타				
조치사항 통보	20 년 월 일() 서면으로 등기우편 발송				
기타사항	<input type="checkbox"/> 형사고소 (고소인: 예시 - 학생(보호자)) <input type="checkbox"/> 민사소송 (원고: 예시 - 학생(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 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재조정 신청 등)				
		작성자: 직(장학사)		성명 :	(서명)
		보고자: 직(교육장)		성명 :	[직인]

[서식 20] 교육지원청 → 양측 당사자

분쟁조정 합의서

신청인1(교원)		신청인2(관련자)	
성 명		성 명	
소속학교 /직급		신청인1과 관계	
연락처		연락처	
주 소		주 소	
분쟁경위 (사안 내용 등)			
당사자의 의견	[신청인1]의 의견 요지 [신청인2]의 의견 요지		
조정결과			
2000년 00월 00일			
신청인1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2		(서명 또는 날인)	
00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서식 21]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협의록(예시)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장 소			
위원정수 : 명	참석위원 : 명	불참위원 : 명	
관련 당사자 참석 유무	신청인1(피해교원)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신청인2(학생, 학부모 등)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신청인2의 보호자	참석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p>○ 회 순</p> <p>1. 개회 2. 당사자 참석여부 확인 3. 조정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p> <p>4. 분쟁조정절차의 목적, 진행 순서, 주의사항 전달</p> <p>5. 관련 당사자 진술(피해교원, 침해 관련자(학생, 학부모 등))</p> <p>6. 조정합의서 작성 7. 폐회</p>			
<p>○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p> <p>[참석위원 명단]</p> <p>[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p> <p>[분쟁조정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p> <p>[당사자 의견 청취]</p> <p>[질의응답]</p> <p>[조정안의 권고]</p> <p>[조정 성립시 분쟁조정합의서(서식20) 작성]</p> <p>[조정불성립된 경우 심의절차로 진행]</p> <p>[심의이후 절차 안내]</p> <p>[폐회]</p>			

[서식 22] 교육지원청 → 교육청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1	신청인2
성명		
구분	(교원, 학생, 보호자 등)	(교원, 학생, 보호자 등)
소속		
주소		
연락처		
신청취지 (요청사항)		
신청원인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증빙자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조에 근거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시·도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23]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고 및 사안 처리 대장

순	피해교원 인적사항			침해 관련자 인적사항			내용	요구서 접수일	사실 조사 기간	위원회 개최일	의결 내용	조치 결과	결과 통보일
	소속	직급	성명	구분	성명	교원과의 관계							
							○ ○						
							○ ○						
							○ ○						

- ※ 내용 란에는 사안 발생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 구분 란에는 학생, 학부모 등 기입
- ※ 결과통보일은 피해교원 및 가해자에게 통보한 날짜
- ※ 의결 내용에 분쟁조정 결과도 포함하여 작성

[서식 24]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서 및 비밀서약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주소			
연락처	근무처		연락처
	E-mail		
위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_____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장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지원청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서식 26] 교육지원청 → 침해 관련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재통지서 공문

○○교육지원청

수신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재통지

1. 관련: ○○○○학교-000호(20○○.○.○.) (조치 미이행 현황 보고 공문 대호)
2.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통지하고자 합니다.

구분	소속	이름	조치 결정사항	비고
학생	○○○○학교 ○학년 ○반	○○○	특별교육 4시간 등	재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이행시 가중 조치 가능
보호자	○○○○학교	○○○	특별교육 4시간 등	재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가능

붙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재통지서[서식 27-1 또는 27-2] 1부. 끝.

[서식 27-1]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재통지서

(학생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에 따라 조치결정을 재통지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치이행 완료일까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학생: ○○학교 ○학년 ○반 성명 ○○○
2. 심의 개최일: 20○○년 ○○월 ○○일
3. 조치 결정 통지일: 20○○년 ○○월 ○○일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4항)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5. 미이행 조치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4항)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6. 조치이행 완료일: 재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년 월 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인

유의사항

(학생) 대상자가 조치 이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8항에 의거하여 조치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보호자)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보호자 등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식 27-2]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정 재통지서

(보호자 등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에 따라 조치결정을 재통지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치이행 완료일까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자 성명: ○○○
- 2. 심의 개최일: 20○○년 ○○월 ○○일
- 3. 조치 결정 통지일: 20○○년 ○○월 ○○일
-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보호자 등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2호)
-------	------------------------------

5. 미이행 조치사항

보호자 등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2호)
-------	------------------------------

6. 조치이행 완료일: 재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년 월 일
 ○○교육지원청 직인
 교육장

유의사항

(보호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보호자 등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50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운영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27.>

[전문개정 2008. 3. 14.]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3.>

④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자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08. 3. 14.]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8조의4(별칭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 4. 23.>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③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신설 2021. 3. 23.>

⑥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8. 3. 14.]

[제목개정 2021. 3. 23.]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중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5로 이동 <2021. 3. 23.>]

제10조의3(구제명령)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3.]

제10조의4(이행강제금)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이 조에서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제명령을 받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0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1. 3. 23.>]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약)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약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시·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약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제12조(교섭·협약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약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 설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약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약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에 각각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의 변화 등으로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9. 27.>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⑥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⑧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중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9. 27.>]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2에서 이동, 중전 제1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9. 27.>]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중전 제1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 9. 27.>]

제18조(교원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9. 27.>]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9. 27.>]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심리 상담 및 조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이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 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19. 12. 10., 2023. 9. 27.>
1. 삭제 <2023. 9. 27.>
 2. 삭제 <2023. 9. 27.>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 9. 27.>]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 9. 27.>]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2025. 1. 31.>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중전 제22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 9. 27.>]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3. 9. 27.>]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3에서 이동 <2023. 9. 27.>]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 2. 19.>

⑩ 제9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2항제4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⑪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⑫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 2. 19.>

⑬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제9항에 따라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2026. 2. 19.>

⑭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2026. 2. 19.>

⑮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2026. 2. 19.>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9. 4. 16., 2023. 9. 27.]

[제18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16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7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29조의2(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①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8.]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람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회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31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8조의2에서 이동 <2023. 9. 27.>]

제3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6. 2. 3.]

[제20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23. 9. 27.]

[제21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3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22조에서 이동 <2023. 9. 27.>]

부칙 <제19735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의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청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종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50호, 2026. 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 제25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45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법령의 제정·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항이나 표기 등을 단순히 반영하기 위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충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4. 3. 26.>]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원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원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5.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8.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 3. 26.]

[제2조의2에서 이동, 충전 제2조의3은 제18조로 이동 <2024. 3. 26.>]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2. 5., 2019. 10. 15., 2024. 3. 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③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9. 10. 15.>

제6조의2 삭제 <2019. 10. 15.>

제6조의3 삭제 <2019. 10. 15.>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 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4. 29.]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29.]

제10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현황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 현황
3의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3. 26.>]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6.]

[종전 제1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3. 26.>]

제12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3. 26.>

②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3. 26.>

1. 해당 시·도 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3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3. 2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해당 안전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전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4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15.]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교육청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할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 3. 26.]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3. 26.]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3.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본조신설 2024. 3. 26.]
 [중전 제1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3. 26.>]

제1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3. 26.>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나.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9.]
 [제2조의3에서 이동, 중전 제18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3. 26.>]

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6.>
 1.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3. 26.>



1.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관할청은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24. 3. 26.]

[제2조의4에서 이동 <2024. 3. 26.>]

제20조(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공제약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6.]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0. 15.]

[제9조의3에서 이동 <2024. 3. 26.>]

제2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② 삭제 <2024. 3. 26.>

③ 교육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학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전문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24. 3. 26.]

[제11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24. 3.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 [본조신설 2016. 8. 2.]
 [제목개정 2024. 3. 26.]
 [제10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23조의2(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
- [본조신설 2025. 9. 16.]

제24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해학생과 그 가족, 피해교원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 나.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및 분쟁 조정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본조신설 2024. 3. 26.]

제25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사의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창,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
 2.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3.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4. 교원의 성별 현황
 5.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시설 안전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관할청인 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본조신설 2020. 6. 9.]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4. 3. 26.>]

제2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
6.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24. 3. 26.]

[제17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3. 26.>

[본조신설 2019. 10. 15.]

[제18조에서 이동 <2024. 3. 26.>]

부칙 <제34326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745호, 2025. 9. 16.>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VI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8. 30.] [교육부고시 제2024-20호, 2024. 8.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0호, 2024. 8.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매우높음	5	5	5	높음	0	0
높음	4	4	4	보통	1	1
보통	3	3	3	낮음	2	2
낮음	2	2	2	없음	3	3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②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독조치 또는 1호·2호 부가 조치 가능 - 4호·5호·6호에 부가 조치 의무

※ 감경 및 가중 여부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하며, 교육활동 보호 및 해당 조치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호	5~7
외부기관 연계선도	2호	8~10
	3호	-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호
	교외	5호
		6호
		7호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교육기본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3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신설 2025. 1. 21.>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④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5. 1. 21.>

⑤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 21.>

⑥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⑦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5. 1. 21.>

[전문개정 2007. 12. 21.]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6. 3. 1.] [법률 제2107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18조의5에서 이동 <2025. 4. 1.>]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2023. 9. 27.>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 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유아교육법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07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②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유치원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치원은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3. 24., 2011. 7. 25., 2021. 3. 23.>

③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신설 2011. 7. 25.>

④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개정 2010. 3. 24., 2011. 7. 25.>

⑤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 7. 25., 2012. 1. 26.>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08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6. 5. 29., 2021. 3. 16., 2023. 12. 2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26.>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6.>

③ 제 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20. 3. 24.]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08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 9.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0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2025 1. 21.>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2025. 1. 21., 2025. 10. 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2. 3., 2025. 10. 1.>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발진				
집필 및 검토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이수경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최민주
	대구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장미숙
	인천	인천일신초등학교	교사	유호성
	광주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정인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남지형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변호사	지산
	세종	부강중학교	교사	김기동
	경기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김세희
	강원	원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최도현
	충북	청주교육지원청	장학사	한인경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김성진
	전북	전주교육지원청	변호사	김종민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변호사	정유미
	경북	경산유치원	교사	남도영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박말임
	제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학사	김방현
	교원노조	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국장	유상범
	교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	백준수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강화국장	진석원
-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변호사	변성숙	
협력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장세은
			서기관	성미정
			행정사무관	민동영
			교육연구관	김주숙
			교육연구사	시민우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쌍철
			연구원	김태화
			연구원	김준규
			연구원	곽준서
			연구원	오서현
	17개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업무담당자

수탁연구자료 CRM 2026-09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한국교육개발원

TEL : 043-530-9114

FAX : 043-530-9819

HOME PAGE : www.kedi.re.kr

발행일 : 2026년 2월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주소 :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발행인 : 고영선

등록번호 : 1973. 6. 13. 제16-35호

인쇄처 : 경성디자인(043-535-7633)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